

2009년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 4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이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I 미국 / 캐나다

1. 미국	11
가. 미국의 경영자보수 손금한도 및 조세회피방지 노력	11
나. 미국 민주당의 경기부양법안(Economic Stimulus Bill)	12
다. 미국의 경기부양법안(H.R.1)	13
라. 미국의 2010 예산안	17
마. 미국의 조세회피방지 노력	23
바. 미국 국제조세 관련 조세개혁 방안 발표	24
사.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2009.07.17)	28
아. 미국: 가산세와 관련된 GAO의 권고안(2009. 06)	30
자. 미국의 증장기 예산안 발표	32
차. 미국 2009회계연도 예산실적 발표	34
카. 미국 주택구입 세액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 연장	36
타. 오바마 대통령의 고용창출 방안 제안	38
2. 캐나다	39
가. 캐나다 Budget 2009 발표	39
나. 캐나다 2009년 예산안 일부 확정(2009.03.12)	42

II 유럽

1. 독일	47
가. 독일의 경기부양 종합대책	47

나. 독일 친환경 신차구입 보조금 재정자금 증액	48
다. 독일 「시민부담경감법안」	49
라. 독일 「탈세퇴치법안」	50
마. 독일 경제성장촉진법안 승인	51
2. 네덜란드	54
가. 네덜란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54
나. 네덜란드 하원 경기부양책 승인	55
다. 네덜란드 「Patent Box」 확대 방안 발표	56
라. 네덜란드 2010 Tax Plan 발표	57
마. 네덜란드 자동차세 개정 검토	59
3. 프랑스	61
가. 프랑스 경기부양 종합대책	61
나. 프랑스 탄소세 도입 논의 등	62
다. 프랑스 레스토랑에 대해 부가가치세 인하	64
라. 프랑스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64
4. 핀란드	66
가. 핀란드 경기부양책	66
나. 핀란드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인하	67
다. 핀란드 「Law on Tax Account」 개정안 승인	68
라. 핀란드 2010 예산안	69
5. 영국	71
가. 영국 2009예산안 발표	71
나. 영국 경기침체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	74
다. 영국 2009 Pre-Budget Report	75

6. 그리스	77
가. 그리스 경기부양책 발표	77
나. 그리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안 발표	78
다. 그리스 법인세 추가 분담금 부과	79
7. 벨기에	80
가. 부가가치세 월별 환급 대상자 확대	80
나. 벨기에 경기회복법	80
다. 벨기에 2010 예산안	82
8. 노르웨이	84
가. 노르웨이의 경기부양 종합대책	84
나. 노르웨이 2009 수정예산안	84
다. 노르웨이 2010예산안(Budget Bill for 2010)	86
9. 덴마크	88
가. 덴마크 친환경 자동차세	88
나. 덴마크 세법개정안 등	89
10. 폴란드	92
가. 개인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승인	92
나. 소득세법 개정안 의회 제출	92
11. 스위스	93
가. 스위스 정부 부가가치세율 인상 캠페인 착수	93
나. 스위스 탄소세율 3배 인상	94

12. 아이슬란드	95
가. 아이슬란드 의회 증세안 검토 중	95
나. 아이슬란드 세법개정안	96
13. 오스트리아	97
가. 오스트리아 2009 세법개정안 및 경기부양책	97
14. 아일랜드	99
가. 아일랜드 2009 추가예산안	99
15. 헝가리	101
가. 헝가리 세법개정(amendments to tax laws)	101
16. 스페인	103
가. 스페인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	103
17. 스웨덴	104
가. 스웨덴 부동산 세제 개정	104
18. 기타 (유럽/OECD)	105
가. 유럽 부가가치세 인상 국면	105
나. UBS에 관한 스위스와 미국 간에 약정 체결	107
다. EU 탄소세 도입 논의	108
라.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8 출간	109

III 아시아

1. 일본	115
가. 일본의 2008 세제개편	115
나. 일본 정액급부금 지급	117
다. 추가 경기대책으로 고속도로 요금인하 실시	118
라. 일본 「4·10 경제위기대책」	118
마. 일본 영토적 과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 도입	119
바. 일본 R&D 세액공제 인상 승인	120
2. 중국	121
가. 중국 위안화의 세계화 추진 및 무역거래 결제 시행	121
나. 중국 일부 업종의 광고선전비 공제한도 확대	122
다. 중국 연구개발기구 설비 구매 세수정책(2009. 10. 10)	123
3. 대만	124
가. 대만의 경제위기 대응 조세정책	124
나. 대만 소득세율 인하	126
다. 대만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국회 승인	127
라. 대만 법인세 및 조세징수법 개정	129
마. 대만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식 통일	130
바. 대만 해외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과세 실시(2009. 9. 18)	132
사. 대만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2009. 10. 28)	134
4. 싱가포르	134
가. 싱가포르 2009 예산안	134
나. 싱가포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한시적 확대	137

5. 홍콩	137
가. 홍콩 2009/2010 예산안	137
6. 호주	139
가. 호주 경기부양법안	139
나. 호주 2009-10예산안	140
다. 호주 내국인의 해외근로소득 과세	141
라. R&D 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변경	141
7. 뉴질랜드	142
가. 조세감면안	142
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143
다. 뉴질랜드 의회 세법개정안 승인	144

I

미국 / 캐나다

1. 미국

가. 미국의 경영자보수 손금한도 및 조세회피방지 노력

조세동향 09-01

- 부시행정부는 2009년 1월 5일 Big2 자동차제조업체에 대하여 1,740억달러,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
 - 2008년 12월 자동차업체의 재정지원을 위해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공화당 상원의 반대로 기각되자,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EESA)의 부실자산프로그램(TRAP)으로 지원
 - 이번 자금지원으로 General Motors Corp.과 Chrysler LLC.이 원활히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 재무부(Treasury)는 부실자산프로그램(TRAP)의 지원을 받는 자동차제조업체의 경영자에 대한 보수에 대한 규정을 강화
 - 최고 5명의 경영진에 대한 보수 손금산입 한도는 1인당 500,000달러로 제한
 - 보수에 대한 손금제한 규정 이외에 별도의 세제지원은 없음
- 2008년 12월, 버뮤다(Bermuda)에 본사를 둔 3개의 대기업¹⁾은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조세정책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위스로 본사이전 계획을 발표
 - 2009년 새로운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버뮤다(Bermuda) 같은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향후 조세회피를 막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

1) 세계최대의 보안시스템 제조업체인 Tyco International Ltd, 원유정제시설 설계업체인 Foster Wheeler Ltd 그리고 Weatherford International Ltd임.

- 오바마 당선자는 상원의원 시절 조세회피납용금지법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였지만, 동 법안에 대한 표결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 대기업의 본사이전 국가로 스위스가 선택된 이유는 ① 미국과의 조세조약체결국이며, ② 스위스 법인세법상 해외자회사의 법인소득은 비과세되기 때문
- 오바마 정부의 조세회피에 대한 정책방향은 종전의 조세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다국적기업(MNE)들의 조세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나. 미국 민주당의 경기부양법안(Economic Stimulus Bill)

조세동향 09-02

-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했던 부양안(stimulus plan)보다 재정지출은 확대되고, 감세 규모는 축소된 경기부양법안(stimulus bill)이 민주당 발의로 28일 하원(House) 통과
 - 총 8,250억달러 중 재정지출로 5,500억달러, 감세규모는 2,750억달러로 배정
 - 인프라 구축, 과학, 에너지, 교육과 의료분야에 재정책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에 중점
 - 감세 규모 감소: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Making Work Pay tax credit은 일부 수용, 고용증진세액공제(new hire tax credit)는 폐기

주요 내용	오바마의 경기부양안	민주당의 경기부양법안
• 감세규모 (총예산규모)	\$3,000억 (\$6,750억~7,750억)	\$2,750억 (\$8,250억)
• Making Work Pay tax credit	연소득 \$200,000 이하인 가구에 \$1000(근로자: \$500)의 세액환급	추가 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외
• New hire tax credit	법인에게 1년간 신규고용 1인당 \$3000의 세액공제	폐지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불확실성)
• 결손금 소급공제	소급공제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추가 TRAP ²⁾ 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적용제외
• 50% 가속상각법	50%의 추가 감가상각비 손금인정 기간을 2년 연장	좌동 (부시정부의 감세정책 일몰규정 확대)

2) 2008년 10월에 통과된 긴급경제안정화법에 따른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 정부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공정가액으로 매입 또는 보증을 수행

- 민주당의 법안에 생애주택첫구입세액공제 요건 폐지, EITC와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확대, 고등교육비세액공제 신설(\$2500 tax credit for higher education costs), 재생에너지 및 환경보존에 대한 세액공제, 고실업률지역 개발채권에 대한 이자면제와 세액공제 등이 추가될 예정
- 하원은 1월 28일 법안을 표결,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Senate) 논의 과정과 2월중 경기부양법안 통과에 난항 예상
 - 공화당 하원의 비판 : 감세규모는 확대되어야 하고, 즉각적인 경기부양을 도모하지 못하는 재정지출(예: 과학, 교육과 의료분야)은 축소되어야 함
 - 상원에서는 Making Work Pay tax credit에 대한 최저한세(AMT) 적용배제 필요성을 재고려 예정
 - 민주당의 반박논리 : 선제적인 고용창출을 통한 소비주체의 체질 강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각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강화

다. 미국의 경기부양법안(H.R.1)

조세동향 09-04

- 경기부양법안(H.R.1;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Tax Act of 2009)에는 2009~19년 동안 7,872억달러 규모로 분야별 재량지출액(Division A) 3,084억달러와 조세·실업·복지 대책(Division B) 4,788억달러로 구성³⁾
 - Division B에 반영된 세제지원은 2009~19년 동안 3,264억달러(재정지출 1,118억달러 포함)로 ㉠ 개인 조세지원(71.2%), ㉡ 에너지 지원(6.1%), ㉢ 법인 지원(1.9%), ㉣ 제조업 회복지원(0.6%), ㉤ 경기회복을 위한 채권발행 지원(2%), ㉦ 기반시설 금융지원(6%), ㉧ 주정부의 저소득가구지원, ㉨ 경기회복 보조금 지원(4.4%), ㉩ 실직가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7.8%)임⁴⁾

· 2009년에는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서 부실자산프로그램의 자금을 일부 지원

3) <http://www.cbo.gov/ftpdocs/99xx/doc9989/hr1conference.pdf>

4) <http://www.house.gov/jct/x-19-09.pdf>

〈경기부양법(H.R.1)에 반영된 조세수입 예측〉

(단위: 백만달러)

	2009	2010	2011	2009-13	2009-19
A. 개인·가구 조세지원	△25,586	△173,163	△31,175	△229,988	△232,426
B. 에너지 지원	△393	△1,482	△1,539	△6,212	△19,963
C. 법인 지원	△39,918	△35,984	2,208	△60,587	△6,150
D. 제조업 회복지원	△1	△174	△297	△1,031	△1,850
E. 채권발행 지원	△227	△348	△566	△2,561	△6,501
F. 기반시설 금융지원	△179	△752	△7,085	△6,001	△19,638
G. 주정부의 저소득가구 지원	△3,033	△49	132	△2,209	△74
H. 경기회복 보조금 지원	△14,041	△169	△15	△14,225	△14,225
I. 실직가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	△14,465	△9,628	△1,525	△25,565	△25,585
합계	△97,843	△221,749	△39,862	△348,379	△326,412

자료: Joint Committee of Taxation, <http://www.house.gov/jct/x-19-09.pdf>

□ 개인·가구에 대한 조세지원(Tax relief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 Making Work Pay Credit 신설
 - 근로소득의 6.2%와 400달러(가구: 800달러) 중 적은 금액이 2009년과 2010년 2년간 환급되며, 총조정후소득(AGI) 금액 75,000달러(가구: 15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액은 감액(phase-out)
 -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500달러(가구 : 1,000달러)에서 환급액이 20% 축소
 - 개인·가구 소득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도에 77.8%, 2009~19년에는 50%에 달함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와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2년간 확대
 - EITC : 세 자녀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을 45%로 인상
 - 자녀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되는 기준소득 금액을 3,000달러로 인하
- 교육지원세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 대학교육비세액공제(HOPE scholarship credit): 2009년의 교육비 지출액(2,000달러 한도)은 전액 공제하고, 2010년에는 2,000달러 초과 금액(4,000달러 한도)에 25% 공제⁵⁾

-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컴퓨터 관련 구입비용을 적격한 고등교육비용으로 인정
 - 생애 첫주택세액공제(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 확대
 -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8,000달러로 인상하고 24개월 이내 주택 처분시 세액공제 금액을 환수하던 규정을 36개월로 완화
 - 실업보험급여(2,400달러 한도)를 2009년 과세소득에서 제외
 - 자동차에 대한 Sales Tax 소득공제
 - 2009년 동안 24,750달러(가구: 49,500달러)를 한도로 신차, 소형트럭, 2륜자동차, 캠프·여행용 자동차(motor homes) 구입액의 sale tax를 소득공제⁶⁾
 - 최저한세(AMT)의 면제금액을 46,700달러(가구: 70,950달러)로 인상
- 에너지 부분 지원 세제
- 재생에너지 생산품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조력발전의 경우에는 2년간 세액공제 및 재생에너지세액공제의 한도금액을 폐지
 -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electric motor vehicles)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확대를 위해 250,000대의 한도규정을 500,000대로 확대
 - 에너지절약채권(Energy conservation bonds) 및 신청정재생에너지채권(New clean renewable energy bonds) 발행 한도를 각각 24억달러와 16억달러로 증액
- 법인세 부분 지원 세제
- 가속상각허용과 이월결손금(NOL)의 소급공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가속상각법의 경우 2010년까지 손금효과가 있고 2011년부터 익금으로 귀속되지만 2009~19년까지 약 58억달러의 세제지원 효과 있음
 - 이월결손금의 소급기간 확대로 2009년에 47억달러의 세수입이 감소되지만 2010년부터 세수입 증가로 2009~19년까지 약 9.5억달러 감세효과
 - 일자리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확대⁷⁾

5) 총조정후소득(AGI) 금액이 80,000~90,000달러를 초과(가구: 160,000~180,000달러)하는 경우 Phase-out 규정 적용

6) 총조정후소득(AGI) 금액이 125,000달러를 초과(가구: 250,000달러)하는 경우 Phase-out 규정 적용

-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특정근로계층 대상자에 '실직퇴역군인(Unemployed Veteran)' 과 'disconnected youth' 를 적용 대상에 추가
- Unemployed Veteran : 2001년 9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에 퇴역한 군인으로서 4주간 주 또는 연방정부의 실업급여를 받은 자
- Disconnected youth : 고용 당시 16~25세인 자로 6개월간 직업훈련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경험이 없는 자 또는 취업을 위한 기술이 없는 자
- 2009년에 0.3억달러, 2010년에 0.8억달러, 2009~19년 기간 동안 약 2.3억달러의 감세효과 예상
-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⁸⁾
 - 2008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월 1일 전까지 채권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8년 이후에 과세소득으로 산입
 - 2009년에 121억달러, 2010년에 228억달러, 2011년에 75억달러의 세수감소를 초래하지만 이연 시점 이후 과세되어 2009~19년 기간에 총 16억달러의 감세효과 예상
- 경기회복지원금(Economic Recovery Payment) 지급
 - Social Security, Railroad Retirement, Veteran's Compensation and Pension, Supplement Security Income benefits 수령 권한이 있는 개인들에게 1회에 한하여 300달러 보조금 지급
 - 2009년에 140억달러, 2010년에 1.7억달러, 2011년에 0.15억달러의 조세지출 예상
 - Social Security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수령자(pensioners)에게 2009년 과세연도에 한하여 1인당 250달러의 환급형 세액공제 허용
 - 2009년에 0.4억달러, 2010년에 1.7억달러로 총 2.2억달러 지원

7) 일자리세액공제(WOTC)는 특정근로계층(복지취약계층, Food stamp 수령자, 저소득 및 장애퇴역군인, 취약지역 출신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임금의 4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1인당 한도 2,400달러)를 제공.

http://www.taxpolicycenter.org/taxtopics/recoveryreport/unemployed_veterans.cfm

8) Deferral and Ratable inclusion of Income arising from indebtedness discharged by the repurchase of a debt instrument

- 실업자 및 실업가구에 대한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지원
 - 비자발적인 퇴직자에 대해 지속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COBRA⁹⁾ 유지보험료(COBRA continuation premiums)의 65% 보조금을 최장 9개월까지 지원
 - 125,0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가구: 250,000달러)은 총조정소득(AGI)에서 감액(Phase-out)
 - 2009년도에 143억달러, 2010년에 91억달러, 2012년에 14억달러, 2009~19년 기간 동안 총 247억달러의 조세지출 예상

라. 미국의 2010 예산안

조세동향 09-05

- 오바마 대통령이 2월 26일 3조 5,520억달러 규모의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함
 - 2009~2019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재정계획 제시¹⁰⁾
 - 향후 10년 동안 6,300억달러를 의료보험 지원에 투입하고, 에너지·교육 분야 등의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약 1조 1,710억달러의 적자예산 편성(GDP 대비 8.0%)

〈미국의 예산추이〉

(단위: 십억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0-2019
예산총액													
세입	2,524	2,186	2,381	2,713	3,081	3,323	3,500	3,675	3,856	4,042	4,234	4,446	35,250
세출	2,983	3,938	3,552	3,625	3,662	3,856	4,069	4,258	4,493	4,678	4,868	5,158	42,219
재정적자	459	1,752	1,171	912	581	533	570	583	637	636	634	712	6,969
GDP 대비													
세입	17.7	15.4	16.2	17.5	18.7	19.0	19.0	19.1	19.2	19.3	19.3	19.5	18.7
세출	21.0	27.7	24.1	23.4	22.2	22.0	22.1	22.2	22.4	22.3	22.2	22.6	22.6
재정적자	3.2	12.3	8.0	5.9	3.5	3.0	3.1	3.0	3.2	3.0	2.9	3.1	3.9

9)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 : COBRA법은 종전 고용주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18개월 동안 퇴직자에게 지속적인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퇴직자는 보험유지 비용 상당액의 102%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함(<http://waysandmeans.house.gov/media/pdf/110/cobra.pdf>).

10) 4월말에 세부내역 발표예정

□ 조세분야 주요 내용

-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과 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폭적인 세제개혁 단행
 -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는 대신 근로자의 95%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 및 감세혜택 제공
 - 이와 같은 세제개혁으로 중산층 근로자의 전반적인 세부담이 1조달러 이상 감소하는 대신 고소득자 및 기업으로 전가되는 효과 발생

□ 부유층에 대한 증세

- 20만달러(부부합산 신고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한계세율 및 자본이득세율, 배당소득세율 인상
 - 소득세 한계세율 인상: 현재의 6단계 누진세율 체계¹¹⁾ 중 33%와 35%의 세율 대신 36%와 39.6%의 세율 적용
 - 부시정부 2001 감세법안(EGTRRA) 이전상태로 회귀
 - 자본이득세율 및 배당소득세율 인상: 자본이득 및 배당에 대해 현행의 15% 대신 20%의 세율 적용
- 2010년 폐지 예정이던 인적공제 삭감규정(phase-out) 및 특별공제 삭감규정(phase-out)¹²⁾ 부활
 - 부시정부 2001 감세법안(EGTRRA) 이전상태로 회귀

11) 소득세 세율(2008-09)

부부합산신고				개인(미혼)			
과세표준 구간		한계세율	과세표준 구간		한계세율		
16,700 이하		10	8,350 이하		10		
16,701	- 67,900	15	8,351	- 33,950	15		
67,901	- 137,050	25	33,951	- 82,250	25		
137,051	- 208,850	28	82,251	- 171,550	28		
208,851	- 372,950	33	171,551	- 372,950	33		
372,950	초과	35	372,950	초과	35		

12)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됨.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한 세입 증가 효과〉

(단위: 백만달러)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고소득자 조세조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0-2019
- \$250,000(기혼) 및 \$200,000(미혼)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 대한 36%와 39.6%의 세율 원상복구	-	-	15,818	29,604	32,755	35,653	38,429	41,588	45,020	48,217	51,676	338,760
- \$250,000(기혼) 및 \$200,000(미혼)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 대한 인적공제 삭감규정 및 특별공제 한도 원상복구	-	-	7,227	15,752	17,848	19,383	20,844	22,364	23,955	25,491	26,984	179,848
- \$250,000(기혼) 및 \$200,000(미혼)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의 자본이득 및 배당에 대해 20%의 세율 부과	-182	1,102	5,416	3,656	7,550	12,235	15,322	16,607	17,663	18,625	19,940	118,116
소계	-182	1,102	28,461	49,012	58,153	67,271	74,595	80,559	86,638	92,333	98,600	636,724

□ 법인의 세부담 증가

- 석유 및 가스회사에 적용되는 조세특례규정 폐지, Superfund¹³⁾ 과세, 경제적인 실질에 따른 과세 강화, LIFO 회계처리 폐지, 임대료 지급에 대한 정보보고의무 강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증대 효과 기대
- 벤처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업무집행 파트너가 파트너십으로부터 받는 이익을 통상소득으로 보아 과세
 - 현재에는 자본이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바, 통상소득으로 분류되면 최고 39.6%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됨
 - 헤지펀드 매니저, 사모펀드 매니저 등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성과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아 주된 표적이 되고 있음

13) 공해방지사업을 위한 대형자금 마련을 위해 석유회사에 부과하던 세금으로 1995년 폐지됐음.

- 국제조세 분야에서 조세회피방지 노력 강화, 기타 세제개혁정책 시행으로 2,100억 달러 상당의 세수증대 효과 기대

〈기업에 대한 증세 및 loophole 방지를 통한 세입증가 효과〉

(단위: 백만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0-2019
- Superfund tax 부활	-	-	1,213	1,667	1,803	1,896	1,970	2,040	2,113	2,203	2,300	17,205
- 통상소득으로 보아 성과보수 과세	-	-	2,742	4,347	4,168	3,494	2,803	2,204	1,725	1,351	1,060	23,894
- 경제적인 실질에 의한 과세 강화	23	70	140	240	346	438	552	656	743	834	930	4,949
- LIFO 폐지	-	-	-	2,992	6,748	8,080	8,431	8,590	8,545	8,630	9,036	61,052
- 국제조세 분야에서 과세강화 및 기타의 조세개혁 정책 시행	-	-	10,000	15,000	20,000	25,000	26,000	27,000	28,000	29,000	30,000	210,000
- 임대료 지급에 대한 정보보고의무 강화	-	319	339	357	374	390	408	426	445	465	486	4,009
- 석유 및 가스회사에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 폐지	-	-	2,050	3,449	3,640	3,592	3,533	3,521	3,707	3,819	4,165	31,476
- 선급 근로세액공제 폐지	-	588	163	-8	10	16	20	23	24	23	23	882
소계	23	977	16,647	28,044	37,089	42,906	43,717	44,460	45,302	46,325	48,000	353,467

□ 감세정책

-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2년간의 근로연계세액공제(Making Work Pay Credit) 영구화
 - 2009, 2010 연도의 근로소득 중 6.2%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400달러(부부합산 신고 800달러) 한도 이내에서 환급
 - 조정후총소득(AGI)이 7만 5천달러에서 9만달러 사이면 공제금액 삭감

- 경기부양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및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확대규정 영구화
 - EITC 확대: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 공제금액 인상, 공제금액 삭감이 시작되는 소득금액 인상
 - 자녀세액공제 확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수준을 3천달러(기존 1만달러) 이상으로 낮춤
- 2,500달러 상당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영구화
 - 고등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으로 2011년부터 적용
- 상속세를 2009년 수준(350만달러(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700만달러) 상당의 공제, 45%의 최고세율)에서 계속 연장
- 저축자세액공제(savers' credit)에 대해 환급 허용, 정부가 1천달러까지 기여금에 대해 50% 상당의 매칭자금 제공
 - 종업원의 자발적인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401(k) 계획(고용주가 401(k) 계획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IRA 계좌)에 대한 기여금을 원천징수해야 함
- 소규모 사업자가 얻은 자본이득에는 세금이 면제되며, 연구 및 시험세액공제규정 영구화
- 결혼금 소급공제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연방항공국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이용되던 일부 소비세 항목 폐지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인한 세입감소 효과〉

(단위: 백만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0-2019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세금감면:												
Making Work Pay Tax Credit 제공	-	-	11,017	63,682	64,119	64,661	65,291	66,001	66,671	67,307	67,979	536,728
EITC 확대	-	-	19	4,013	3,961	3,961	4,006	4,090	4,176	4,268	4,364	32,858
Child Tax Credit의 환급 확대	-	-	-	8,714	8,616	8,609	8,703	8,786	8,902	9,020	9,119	70,469
savers' credit 확대 및 IRA 및 401(k)에 의 자동가입	-	-	257	3,018	4,707	5,926	6,909	7,722	8,371	8,916	9,406	55,232
고등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	-	932	6,770	7,487	8,144	9,237	10,036	10,312	10,646	11,295	74,859
소계	-	-	12,225	86,197	88,890	91,301	94,146	96,635	98,432	10,0157	10,2163	770,146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폐지	-	-	-	-	-	297	734	1,026	1,345	1,695	2,076	7,173
연구 및 시험세액공 제 영구화	-	3,111	5,486	6,142	6,785	7,384	7,960	8,530	9,103	9,680	10,281	74,462
이월결손금 소급공 제 확대	27,800	35,700	-10,700	-10,200	-7,900	-5,600	-3,900	-2700	-1,800	-1,300	-900	-9,300
연방항공국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용 되던 소비세 항목 폐지	-	-	7,225	7,599	7,980	8,260	8,559	8,869	9,190	9,527	9,873	77,082
소계	27,800	38,811	2,011	3,541	6,865	10,341	13,353	15,725	17,838	19,602	21,330	149,417

마. 미국의 조세회피방지 노력

조세동향 09-06

- 상원 재정위원회의 의장 Max Baucus가 조세회피방지법안 초안을 배포함
 - Baucus Bill은 UBS 사건¹⁴⁾에서 나타난 조세납용 방지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아직까지 사전준비 단계에 있는바, 상원에 도입되기 전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 Baucus Bill과는 별도로 상원의원 Levin 역시 조세피난처납용방지법안을 준비중에 있음
 - Baucus Bill은 Levin과는 달리 획기적인 개혁보다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Baucus Bill에는 역외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에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역외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되는 자금의 가액, 계좌정보, 수령자를 IRS에 보고해야 함
 - 특정 국제거래에 대한 신고의무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6년으로 연장
 - 역외계좌신고서를 세무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역외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무대리인(tax preparer)에게 일련의 사전확인 질문(due diligence question)을 하도록 함
 - 해외펀드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강화
 - 특히, 펀드의 실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10,000달러의 가산세를 부과
 - 해외펀드로부터 분배받은 것으로 보는 자산의 유형을 예술품 및 보석으로까지 확대
 - 일부 역외거래에 귀속되는 과소납부에 대한 벌금 및 가산세를 두 배로 증액

14) 스위스 은행 UBS가 미국 납세자에게 비밀계좌를 개설하여 정보보고 의무를 회피하고, 탈세를 할 수 있게 도운 사건

바. 미국 국제조세 관련 조세개혁 방안 발표

조세동향 09-09

- 5월 4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질의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피난처를 근절하기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함
 - 미국 내 투자기업보다 해외투자기업에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현행의 조세체계를 개편하여 미국 내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04년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능동적 소득(active income)의 약 2.3%를 미국에서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음
 - 올해 1월에 나온 美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00대 대기업 중 83개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갖고 있으며, 2003년에 미국 기업이 보고한 전체 해외소득 중 약 1/3 가량이 버뮤다, 네덜란드 그리고 아일랜드로부터 얻은 것임
 - 오바마 행정부는 5월말 발표 예정인 전체 예산안에 포함될 국제조세 분야의 추가 개편안과 더불어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10년간에 걸쳐 약 2,100억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제개편안을 제시함
 - 첫째,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과세이연 규정(Deferral Rule)을 개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허점(loophole)을 차단함
 - 둘째,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 축소를 통해 조달되는 추가적인 세수를 이용하여 R&D공제제도를 영구화함
 - R&D공제제도의 영구화는 기업의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R&D 비용의 75%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바, R&D공제의 영구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됨

〈미국의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방안〉

	현행규정	개편안	세수효과 (FY 2011~ FY 201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기업은 해외투자소득에 대해 미국에 송금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경비에 대해 지출 즉시 공제가 가능함 - 그 결과 해외투자기업이 미국 내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조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 	<p>해외투자지원경비(R&D비용 제외)의 손금산입 시점을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시점과 일치시킴</p>	약 \$601억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미국 기업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공제액을 부풀리거나 공제시기를 앞당기고 있음 - 일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 국내투자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원천소득 총액에 대해 납세자가 실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총액에 기초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 ○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불허함 	약 \$430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규정 형태로 R&D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981년에 R&D공제제도가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13번에 걸쳐 연장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p>연구 및 혁신에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R&D 공제를 영구화함</p>	약 \$745억

□ 이와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은 조세피난처의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개편안을 제시함

- 첫째, 해외 자회사의 존재를 드러나지 않게 해줌으로써 해외 자회사 간의 소득의 이전에 대해 과세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허점(loophole)을 제거함
- 둘째, 개인의 조세피난처 악용을 근절함
- 셋째, 국제조세에서 tax gap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인력을 보강함

〈조세피난처 근절을 위한 세제개편방안〉

	현행규정/제도	개편안	세수효과 (FY 2011~ FY 201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모회사가 조세피난처와 그 밖의 국가에 각각 하나씩 해외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 간에 이전되는 소득(예를 들면 대여금 이자)은 모회사의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과세함 ○ 그러나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기업들은 “check-the box” 규정¹⁾을 이용하여 해외 자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의 이전에 대해 과세를 회피해 옴 	<p>특정 해외 자회사는 미국의 과세 목적상 별도의 법인으로 보도록 함</p>	약 \$865억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I(Qualifying Institution)제도²⁾가 정보보고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QI가 취하여야 할 입증절차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어 손쉽게 원천징수의무를 빠져 나갈 수 있음 - QI가 아닌 금융기관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QI 자격을 얻을 수 있는바, 금융기관이 합법적인 QI의 운영과 불법적인 non-QI의 운영을 통해 탈세의 도관(conduit)으로서 기능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줌 - QI는 미국 고객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없는데, 미국 고객이 외국법인 뒤에 숨는 경우 QI의 보고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³⁾에 대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신고서의 제출을 강요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음 ○ QI제도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률규정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부유층 납세자를 단속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법을 근절하기 위해 QI제도를 강화함 - 미국 금융기관이 QI가 아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30%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원천징수 금액의 환급을 위해서는 투자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규 준수 사실을 입증해야 함 - 미국인이 QI가 아닌 금융기관에 해외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FBAR 신고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고 추정함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특정 역년 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QI가 아닌 금융기관의 계좌에 20만달러 이상의 잔액을 갖고 있었다면 FBAR 신고의무를 불이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⁴⁾ - 통상적인 지배하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이 QI인 경우에만 QI 자격을 부여함 ○ 국세청이 국제조세 관련 탈세사건의 기소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수단을 제공함 -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 불이행시 	약 \$87억

	현행규정/제도	개편안	세수효과 (FY 2011~ FY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에 대한 페널티가 과소신고금액의 20%로 제한되어 있음 - 해외계좌를 보유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기간(3년)이 지나치게 짧음 - 미국인이나 제3자가 해외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해외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을 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국세청의 조사능력에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를 두 배로 증가시킴 - 국제조세와 관련된 세무조사 가능기간을 6년으로 연장함 - 미국 고객에 대한 QI의 정보보고의무를 미국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함 - 미국 고객이 외국법인 뒤에 숨어 정보보고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함 - 미국의 투자자가 소득세 신고 때 QI가 아닌 해외 금융기관에 이체하였거나 QI가 아닌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 받은 자산이나 자금에 대해 신고하도록 함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아래와 관련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고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인을 위해 해외 사업체를 설립하는 거래 ▪ 미국인을 위해 해외 금융계좌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해외 금융계좌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거래 	
4		국제조세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약 800명의 국세청 직원을 신규채용함	

- 주: 1) 자회사의 법적 형태에도 불구하고 과세 목적상 자회사를 모회사의 지점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따라서 check the box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과세 목적상 해외 자회사가 드러나지 않게 됨.
- 2) 미국의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중개기관이나 도관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기관이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보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 법률 개정시 QI제도를 도입함. QI로 인정받은 금융기관은 국세청이 지정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보보고의무가 있는 이자를 지급받는 미국인 고객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는 정보보고의무가 면제되는 등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3) 당해 역년 중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계좌를 가진 미국인은 재무부 금융범죄수사국(FinCEN) 또는 국세청에 (TD Form 90-22.1)을 신고해야 함.
- 4)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반증(反證)을 들어 그 추정을 전복시킬 수 있음.

사.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2009.07.17)

조세동향 09-15

- 미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¹⁵⁾가 2009년 7월 17일 의료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킴
 - 오바마 행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세(surtax) 부과 등을 통해 의료보험 개혁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확보할 계획임
 - 합동세제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이하 “JCT”)는 동 법안의 실행 시 향후 10년간에 걸쳐 \$5,833억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¹⁶⁾
 - 또한 전 국민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 및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임
 - 다만, 의료보험 제공으로 인해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 계획임
 - 동 법안은 7월말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의료보험 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8월말 휴회 이전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은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적 소득세로부터 조달됨
 - 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과세소득이 35만~50만달러이면 1%, 50만~100만달러이면 1.5%, 100만달러를 초과하면 5.4%의 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됨(부부합산신고 기준)
 - 개편안에서는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으로 하여금 2012년 12월 1일까지 2010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의 의료보험 비용절감액을 추산하여 보고하도록 함
 - 의료보험 개혁안으로부터의 비용절감 추산액이 1,500억달러 이하라면 2013년부터는 하위 두 개 소득구간의 부가세율이 각각 2%와 3%로 증가함

15)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세법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함.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한 세법안은 하원 본회의→상원 재무위원회→상원 본회의→양원 합동위원회→상원과 하원의 의결→대통령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됨.

16) 의무 불이행시 개인 또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 그러나 비용절감 추산액이 1,500억달러 초과 1,750억달러 이하라면 기존의 부가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비용절감 추산액이 1,750억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부가세가 과세됨
- JCT는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통해 향후 10년간 5,439억달러의 세수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부가세율〉

조정 후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가구 비중	부가세율			
		FY 2010 ~ FY 2012	FY 2013~		
			FY 2010~FY 2019의 의료보험 비용절감 추산액		
			~\$1,500억	\$1,500억 ~\$1,750억	\$1,750억~
\$350,000~\$500,000 (독신 \$280,000~\$400,000)	0.50%	1%	2%	1%	-
\$500,000~\$1,000,000 (독신 \$400,000~\$800,000)	0.45%	1.5%	3%	1.5%	-
\$1,000,000 초과 (독신 \$800,000 초과)	0.27%	5.4%	5.4%	5.4%	5.4%

- 개편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타 세수조달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 걸친 전체적인 이자비용의 배분(worldwide interest allocation)¹⁷⁾” 을 연기함
 -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61억달러의 세수조달효과가 기대됨
 - 세금에서 공제되는 일부 지급금에 대한 조약상 혜택을 제한함
 -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75억달러의 세수조달효과가 기대됨
 -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과세원칙을 성문화함
 -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6억달러의 세수조달효과가 기대됨

17)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기업 전체의 이자비용을 일정한 공식에 의해 국가별로 배분 후 국외 원천소득을 계산함. 예를 들어 미국 뉴욕에 본점을 둔 미국법인이 동경과 런던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 본점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일본과 영국의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한 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

- 이와 함께 경제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의 비공개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20%에서 40%로 인상할 계획임
- 개편안에 따르면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종업원 급여의 8%에 상당하는 급여세(payroll tax)가 부과됨
 - 다만, 급여가 40만달러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경감세율이 적용됨
 -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는 조정 후 총소득(AGI)의 2.5%에 해당하는 부가세(surtax)가 과세됨
 - 이와 같은 조치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 종업원이 25명 이하인 소기업은 의료보험 제공에 드는 비용의 50%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종업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8만달러 이상의 급여소득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아. 미국: 가산세와 관련된 GAO의 권고안(2009. 06)

조세동향 09-16

- 美 회계감독원(GAO)은 美 상원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이 가산세의 평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 GAO는 국세청 내 가산세서비스국(Office of Servicewide Penalties: 이하 “OSP”)이 가산세와 관련된 세무행정 및 가산세가 자발적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국세청 policy에 따르면 OSP는 가산세 및 가산세와 관련된 세무행정을 평가하고, 가산세가 자발적 납세순응도의 제고에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국세청의 policy는 1989년 가산세 개혁시 국회 및 국세청의 태스크포스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안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임

- 그러나 현재 OSP의 활동은 국세청의 policy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보다는 갑작스런 가산세의 부과 또는 경감과 같은 단기적인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에 대해 OSP의 관리들은 자원의 제약, 연구방법론상의 한계,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족 때문에 가산세와 관련된 세무행정 및 가산세가 자발적 납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GAO는 가산세의 평가와 관련된 국세청의 계획수립이 이 문제에 국세청의 노력을 집중하고, 제약사항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함
 - 계획의 수립을 위해 국세청은 꼭 해야만 하는 분석과 이러한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인해야 함
 - 그런 다음에야 OSP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자원이 이용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음
 - 계획의 수립은 가산세가 자발적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연구의 설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예를 들어 공평성은 자발적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가산세가 국세청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데이터에 대한 제한 역시 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
 - 집행세수정보시스템(Enforcement Revenue Information System: 이하 “ERIS”)에는 국세청의 집행활동과 관련된 상당량의 데이터가 담겨 있지만, 1989년 국세청의 태스크포스 보고서에서 제안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ERIS에는 납세자의 공평한 취급을 판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납세자의 소득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 미국의 중장기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09-18

- 美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과 美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이하 “CBO”)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예산을 발표함
 - OMB는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누적 예산적자가 9.05조달러(10년간 평균 GDP의 5.1%)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CBO는 이보다 적은 7.14조달러(10년간 평균 GDP의 4%)로 예측함
 - 한편 OMB와 CBO 모두 2009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약 1.6조달러(GDP의 약 11.2%)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함

- OMB의 재정적자 추정치는 5월에 발표한 재정적자 추정치보다 2조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CBO의 동일 기간 재정적자 추정치 7.14조달러보다 많음
 - Peter Orszag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이전의 추정치에 비해 특정 프로그램(예: 실업보험, 푸드 스탬프)의 예산 지출이 증가하고, 세수가 줄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자동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 한편 OMB와 CBO 간에 전망치가 다른 이유는 OMB는 현재의 정책에 기초하여 예산을 추정한 반면 CBO는 현재의 법률에 기초하여 예산을 추정했기 때문임
 - 즉, CBO는 현재 일몰규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주요 감세조치가 2011년에 예정대로 모두 종료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추정한 반면 OMB는 이 중 일부만이 종료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OMB의 재정적자 추정치가 CBO의 재정적자 추정치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1〉 OMB의 예산전망(FY2010-FY2019)

(단위: 십억달러,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0-2014	2010-2019
총수입(Receipts)		2,524	2,074	2,264	2,591	2,945	3,161	3,365	3,582	3,791	3,985	4,186	4,389	14,326	34,259
총지출(Outlays)		2,983	3,653	3,766	3,715	3,741	3,936	4,143	4,321	4,586	4,795	5,001	5,307	19,300	43,309
재정적자(Deficit)		459	1,580	1,502	1,123	796	775	778	739	795	810	815	917	4,974	9,051
연도 말 국가채무		5,803	7,856	9,575	10,590	11,443	12,281	13,126	13,927	14,782	15,651	16,523	17,493		
G D P 대 비	총수입	17.7	14.7	15.7	17.1	18.4	18.6	18.7	18.8	19.0	19.0	19.1	19.2	17.7	18.4
	총지출	21.0	25.9	26.1	24.6	23.3	23.2	23.0	22.7	22.9	22.9	22.8	23.2	24.0	23.5
	재정적자	3.2	11.2	10.4	7.4	5.0	4.6	4.3	3.9	4.0	3.9	3.7	4.0	6.3	5.1
	연도 말 국가채무	40.8	55.7	66.3	70.0	71.4	72.3	72.9	73.2	74.0	74.7	75.5	76.5		

자료: OMB, *Mid-Session Review*, 2009. 8.

〈표 2〉 CBO의 예산전망(FY2010-FY2019)

(단위: 십억달러,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0-2014	2010-2019
총수입(Receipts)		2,524	2,100	2,264	2,717	3,010	3,221	3,403	3,577	3,737	3,908	4,081	4,260	14,614	34,177
총지출(Outlays)		2,983	3,688	3,644	3,638	3,600	3,759	3,961	4,135	4,358	4,534	4,703	4,982	18,602	41,314
재정적자(Deficit)		459	1,587	1,381	921	590	538	558	558	620	626	622	722	3,988	7,137
연도 말 국가채무		5,803	7,612	8,868	9,782	10,382	10,870	11,439	11,986	12,581	13,174	13,611	14,324	n.a.	n.a.
G D P 대 비	총수입	17.7	14.9	15.7	18.1	19.1	19.4	19.6	19.9	19.9	20.0	20.1	20.2	18.5	19.3
	총지출	21.0	26.1	25.2	24.3	22.8	22.6	22.9	22.9	23.2	23.2	23.2	23.6	23.5	23.4
	재정적자	3.2	11.2	9.6	6.1	3.7	3.2	3.2	3.1	3.3	3.2	3.1	3.4	5.0	4.0
	연도 말 국가채무	40.8	53.8	61.4	65.2	65.9	65.5	66.0	66.5	67.1	67.5	67.0	67.8	n.a.	n.a.

자료: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An Update*, 2009. 8.

- 의회예산국장 Douglas Elmendorf는 지나치게 이른 긴축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자들이 재정적자 규모의 축소를 위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새로운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 원내대표인 Mitch McConnell은 막대한 국가채무가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국가안보, 고령자·퇴역군인 및 근로가정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행 능력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함
- 반면, 미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 Kent Conard는 CBO가 6월에 대통령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이와 유사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이미 예측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언급함
 - 그러나 이번 보고서로 인해 개인의 의료보험비용과 정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밝히면서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세입 시스템을 비롯하여 균형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초당파적 위원회의 구성을 거듭 주장함
- 소득 수준이 25만달러 이하인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재정적자 규모의 증가로 인해 광범위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음
 - Elmendorf는 세금의 증가가 경제활동에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GDP 대비 조세부담이 미국 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조세변동의 잠재적 효과에 관한 CBO의 가장 최근 보고서¹⁸⁾에서는 2001년과 2003년에 시행한 조세감면이 2011년에 종료될 경우, 약 2천억달러(또는 1.3%) 규모의 GDP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함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CBO는 세금감면이 종료될 경우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해 GDP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이것이 연방정부의 부채감소 효과와 상쇄되면서 GDP가 평균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옴

차. 미국 2009회계연도 예산실적 발표

조세동향 09-21

- 9월 말로 끝난 미국의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4,170억달러(GDP의 10%)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함

18)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an update, p. 40, 2009. 8.

- 이는 2008회계연도의 3배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9,620억달러 증가한 것임
 - 금융자산을 차감한 연방정부의 부채규모는 6조 7,110억달러로 GDP의 47.2%에 달함
-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16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경기부양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지출은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와 감세로 세수는 줄어 재정적자가 크게 늘었다고 밝힘
- 2009회계연도 적자의 대부분은 부시 행정부로부터 넘어온 정부지출과 조세정책의 산물로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 진행중이던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인해 심화됨
 -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한 경기부양 대책인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과 경기부양법(recovery act)의 시행으로 인한 적자는 전체 적자의 24%를 차지함
- 2009회계연도의 재정수입은 2조 1,050억달러인 반면 재정지출은 3조 5,220억달러를 기록함
- 2009회계연도의 재정수입은 2008회계연도에 비해 4,190억달러(16.6%) 감소함
 - 2008회계연도의 재정수입은 GDP의 17.5%였으나, 2009회계연도에는 14.8%로 떨어짐
 - 재정수입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줄어들었고, 2009년 2월에 시행된 경기부양법의 영향으로 세금감면액이 증가했기 때문임
 - 2009회계연도의 재정지출은 2008회계연도에 비해 5,430억달러(18.2%) 증가함
 - 2008회계연도의 재정지출은 GDP의 20.6%였으나, 2009회계연도에는 24.8%로 증가함
 - 재정지출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금융자산구제프로그램(TARP),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의 우선주 구입, 경기부양법(Recovery Act) 등과 같은 임시조치의 시행 때문임
 -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medicaid),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과 같은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통한 지출의 증가 역시 재정지출 증가의 원인이 됨

〈총수입, 지출 그리고 재정적자〉

(단위: 십억달러)

	수입	지출	재정적자
2008회계연도 실적	2,524	2,978	- 455
2009회계연도 추정			
2009년 5월 예산	2,157	3,998	-1,841
2009년 8월 중간 session 검토	2,074	3,653	-1,580
2009회계연도 실적	2,105	3,522	-1,417

- 2009회계연도의 실제 재정적자는 2009년 5월과 8월의 예상치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향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5월에는 1조 8,410억달러, 8월에는 1조 5,80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었으나, 실제 재정적자는 이보다 각각 4,240억달러와 1,630억달러가 적은 1조 4,170억달러를 기록함
 -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를 지탱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카. 미국 주택구입 세액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 연장

조세동향 09-23

- 미국 하원이 11월 5일,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Home Buyer Credit)와 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NOL carryback) 혜택을 연장·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당초 올해 11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의회의 승인을 얻음에 따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됨
 - 또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결손금 소급공제 혜택이 전체 기업으로 확대됨
- 동 법안에 따르면 생애 첫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는 최대 8,000달러까지, 반복 구매자의 경우에는 최대 6,5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
 - 생애 첫주택 구입자의 경우 2010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6월 말까지 잔금을 치를 경우 최대 8,0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

- 한편 종전에는 생애 첫주택 구입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주택에 과거 8년간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하였다면 신규 주택 구입에 대해 최대 6,5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
 - 최초 구매자와 반복 구매자 모두 소득금액이 125,000달러(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22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이에 비례하여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
 -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이하 “JCT”)는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변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08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기업이 2008년 또는 2009년에 발생한 손실을 과거 5년간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또한 포함되어 있음
- 2009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적용대상 기업을 연매출이 1,500만달러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
 - 그러나 금번 법안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임
 - 동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다섯 번째 연도의 이용가능 소득의 50%와 나머지 4개 연도의 이용가능 소득의 100%를 결손금과 상계 가능함
 - JCT는 결손금 소급공제의 확대로 향후 10년간 104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 상기 법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재정적자의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임
- 0.2%의 추가적인 연방정부실업세의 부과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S회사와 파트너십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높임
 - 전 세계 이자비용 배분 혜택(worldwide interest allocation benefit)¹⁹⁾의 최초 시행일을 2017과세연도 이후로 연기함

19)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기업 전체의 이자비용을 일정한 공식에 의해 국가별로 배분한 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 예를 들어 미국 뉴욕에 본점을 둔 미국법인이 동경과 런던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 본점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일본과 영국의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한 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수 있음.

타. 오바마 대통령의 고용창출 방안 제안

조세동향 09-25

-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8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의 연설을 통해 실업문제의 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기부양법에 따른 일부 감세조치의 연장과 새로운 감세조치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감세 이외에도 사회 인프라 건설 투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cash for caulkers) 등을 제안함

-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한 감세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특정 유형의 상각가능 자산에 대해 50%의 추가적인 상각을 허용하고 있는 가속 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2010년(현재는 2009년까지 적용)까지 연장함
 -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25만달러의 범위 내에서 즉시상각을 허용하고 있는 감가상각특별제도의 적용기한을 2010년(현재는 2009년까지 적용)까지 연장함
 -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1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개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주식의 매각에서 얻은 이득의 75%를 총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조치의 적용기한(현재는 2010년까지 적용)을 연장함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감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음
 - 백안관은 현재 고용세액공제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입법가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함
 - 중소기업이 고용한 근로자 수에 기초해 고용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부터 급여세(payroll tax)의 감면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중에 있음

- 美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 법안에 관해 조만간 표결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美 의회는 고용대책을 위해 증세나 다른 지출을 삭감할 경우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미 예산적자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함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구제자금 상환으로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으로 인한 손실이 당초의 예상보다 2,000억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중 일부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2. 캐나다

가. 캐나다 Budget 2009 발표

조세동향 09-03

- 1월 27일 재무성이 발표한 2009 예산안은 300억캐나다달러(GDP의 1.9%)의 규모로 경기부양 및 190,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2008~09년과 향후 5년 동안 218억캐나다달러의 조세지출 중 개인의 감세규모가 약 200억캐나다달러, 법인에 대한 조세혜택은 18억캐나다달러로 구성

〈2009 예산안에 반영된 조세지출〉

(단위 : 백만캐나다달러)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합계
개인소득세							
인적공제와 과세구간 조정	470	1,885	1,950	2,055	2,180	2,320	10,860
근로장려세제 확대	145	580	580	585	585	585	3,060
연령세액공제 확대	80	325	340	360	380	405	1,890
주택개조세액공제(신설)	500	2,500	-	-	-	-	3,000
생애첫주택세액공제(신설)	30	175	180	185	185	190	945
주택구매계획 한도 증액	-	15	15	15	15	15	75
광물 탐사세액공제 확대	-	70	△15	-	-	-	55
RRIF/RRSF의 사후손실	30	-	-	-	-	-	30
(소계)	1,255	5,550	3,050	3,020	3,345	3,515	19,915
법인세							
소기업 적용 기준 상향	-	45	80	80	90	100	395
50% 가속상각법 적용 연장	-	-	-	320	530	140	990
컴퓨터 즉시상각(신설)	-	340	355	△125	△160	△105	305
이자 공제	-	-	-	-	80	105	185
(소계)	-	385	435	275	540	240	1,875
합계	1,255	5,935	3,485	3,475	3,885	3,755	21,790

자료: 캐나다 재무성,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Budget 2009, January 2009, p.254

□ 개인소득세 부분의 감세정책

○ 인적공제와 과세구간에 대한 불가연동

- 인적공제(personal amount)는 9,600캐나다달러에서 10,320캐나다달러로 7.5% 증액
-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 상한을 37,885캐나다달러에서 40,726캐나다달러로,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 상한을 75,769캐나다달러에서 81,452캐나다달러로 증액

- 근로장려세제(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²⁰⁾)의 확대
 - 세액공제율(Phase-in rate)을 20%에서 25%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상한을 가구구성에 따라 1.5~1.8배로 증액
 - 2007년 도입 당시 1백만 근로가구가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2009년 예산안으로 세제지원 대상이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근로장려세제(WITB)의 변동 내용〉

(단위 : 캐나다달러)

구 분	기준근로소득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상한	
	종전	예산안	종전	예산안	종전	예산안
독신근로자	3,000	좌동	20%	25%	522	925
부부 또는 자녀부양 가구					1,044	1,680

주: 세액공제의 상한이 적용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감소되는데 감소비율(Reduction rate)은 15%로 변동 없음

- 65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적용되는 연령세액공제(Age credit)를 1,000캐나다달러 증액
-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지원
 - 주택개조세액공제(Home Renovation Tax Credit) : 2009년 1월 27일부터 2010년 2월 1일까지 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적격 지출비용이 1,0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한도 10,000캐나다달러), 초과비용의 15% 상당액을 세액공제로 허용
 - 생애 첫주택 세액공제(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 1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개인에게 주택구입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750캐나다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
 - 주택구매계획(Home Buyers' Plan; HSP²¹⁾)의 상환금 증액: HSP를 통해 은퇴연금저축(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RR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20,000캐나다달러에서 25,000캐나다달러로 증액

20)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2007년부터 도입된 환급형 세액공제로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21) HSP는 생애첫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은퇴연금저축(RRSP)에서 20,000캐나다달러까지 자금을 인출하여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금융지원 제도로, 생애 첫주택 구입자는 동 자금을 향후 15년간 분할 상환하여야 함. HSP를 통해 받은 자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할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산입됨.

□ 법인세 부분의 감세정책

- 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11%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소기업의 소득판정 기준을 400,000캐나다달러에서 500,000캐나다달러로 상향조정
-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컴퓨터 부문 취득시 즉시 상각 인정 : 2009년 1월 27일부터 2011년 2월 1일까지 취득하는 컴퓨터 기기와 시스템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율을 100%로 하여 즉시 상각 처리 가능
 - 50% 정액 가속상각법 적용 연장 : 2007년부터 적용되던 제조업 기계설비에 대한 50% 정액 가속상각법을 2010~2011년까지 적용하도록 연장
 - 기계장치와 설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
-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 삭제

나. 캐나다 2009년 예산안 일부 확정(2009.03.12)

조세동향 09-07

- 캐나다 2009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제개편안 중 일부 내용을 담은 C-10 법안이 3월 12일, 의회의 최종적인 승인을 얻음
 - 동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은 2009년 하반기 입법 예정

□ C-10 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200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2009년 예산안	C-10 법안 포함여부															
개인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개조세액공제(Home Renovation Tax Credit) : 2009년 1월 27일부터 2010년 2월 1일 사이에 주택의 개조를 위해 1,0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지출(10,000캐나다달러 한도)을 하는 경우 지출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비환급형)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공제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공제 인상: 9,600캐나다달러에서 10,320캐나다달러로 7.5% 인상(물가연동) - 하위 두 개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소득금액 7.5% 인상(물가연동) <table border="1" data-bbox="452 655 976 828"> <thead> <tr> <th colspan="2">소득구간(CAD)</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40,726 이하</td> <td>15</td> </tr> <tr> <td>40,727</td> <td>- 81,452</td> <td>22</td> </tr> <tr> <td>81,453</td> <td>- 126,264</td> <td>26</td> </tr> <tr> <td colspan="2">126,264 초과</td> <td>29</td> </tr> </tbody> </table> 	소득구간(CAD)		세율(%)	40,726 이하		15	40,727	- 81,452	22	81,453	- 126,264	26	126,264 초과		29	포함
	소득구간(CAD)		세율(%)														
	40,726 이하		15														
	40,727	- 81,452	22														
	81,453	- 126,264	26														
	126,264 초과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First time home-buyers tax credit) : 2009년 1월 27일 이후에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750캐나다달러 상당의 세액공제(비환급형)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구매계획(Home Buyers' Plan) : 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입이나 신축을 위해 세금부담 없이 은퇴연금저축에서 인출이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20,000캐나다달러에서 25,000캐나다달러로 인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세액공제(Age Credit) 인상 : 고령자세액공제를 2009년 1월 1일부터 1,000캐나다달러만큼 증액(5,408캐나다달러 → 6,408캐나다달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장려세제(Working Income Tax Benefit: WIBT) - 2009 과세연도 및 이후의 WIBT 관련 예산을 5억8천만캐나다달러만큼 증액시킴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자녀세액공제(Canada Child Tax Benefit)의 점감이 시작되는 기준소득금액을 2009-10 연도에 40,726캐나다달러로 인상 - 국가자녀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의 점감이 시작되는 기준소득금액을 1,894캐나다달러만큼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이후 은퇴저축연금/은퇴소득기금 손실 : 사망 후에 은퇴저축연금 또는 은퇴소득기금으로부터 발생한 가치하락 손실을 사망일이 속한 과세연도 은퇴저축연금 또는 은퇴소득기금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물탐사세액공제(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구분	2009년 예산안	C-10 법안 포함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동안 모든 통상적인 고용보험 수급 기간을 5주 연장(45주→50주) - 피보험이익 100캐나다달러당 1.73캐나다달러의 고용보험료를 2010년에도 유지 	포함
법 인 과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감세율 적용을 받기위한 소기업의 능동적인 사업소득기준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의 소기업 세율이 적용되는 능동적인 사업소득기준금액(active business income)을 400,000캐나다달러에서 500,000캐나다달러로 인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세액공제 한도가 점감하는 과세소득 구간을 400,000~700,000캐나다달러에서 500,000~800,000캐나다달러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및 가공부문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과 2011년에 취득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해 50%의 정액가속상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에 대한 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월 27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즉시상각 허용 ※ 일반적인 경우에는 55% 체감잔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국 제 조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공제제한 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에 발효되는 새로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이 외국 자회사에 대여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의 공제에 제한이 있음 - 그러나 동 규정이 캐나다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 따라 이자공제제한 규정을 삭제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 신탁 및 해외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거주자가 해외 중개기관 이용을 통해 기존의 조세회피방지규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세제개편 고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2월에 발표한 해외 자회사 관련 조치에 대해 세제개편 고려중 	

II

유 럽

1. 독일

가. 독일의 경기부양 종합대책

조세동향 09-03

1) 독일 경기부양 종합대책 II

- 연방내각(federal cabinet)은 지난 2009년 1월 14일 현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경기부양 종합대책II(economic stimulus package II)를 승인
- 조세분야 주요 내용
 -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
 - 현 7,664유로의 기본공제액을 2009년 1월 1일부터 7,834유로, 2010년 1월 1일부터 8,004유로로 인상
 - 개인소득세 최저세율 인하(15%→14%)
 - 또한 개인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세구간 조정
 - 2009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료율 인하(15.5%→14.9%)
 - 고용보험료율을 2010년 7월 1일 이후에도 2.8%로 유지
 - 일회성 정책으로 자녀당 100유로의 자녀보조금 지급
 - 2009년에 9년 이상 소유한 차량을 폐기하고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500유로를 지급
 - 2009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를 엔진크기가 아닌 CO₂ 배출량에 따라 부과

나. 독일 친환경 신차구입 보조금 재정자금 증액

조세동향 09-08

- 독일 정부는 2009년 1월 14일 9년 이상 된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유럽의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 4(Euro 4)를 충족하는 친환경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환경보조금으로 1인당 2,500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
 - 목적
 - 독일의 중요 기간사업인 자동차 업계 원조
 -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구입 장려를 통한 소비 촉진
 - 고용(독일 고용의 7분의 1은 자동차와 관련) 안정 도모
 - 시행기간: '09년 1월 14일~12월 31일
 - 기타 요건 및 신청방법
 - 구입된 자동차는 늦어도 2010년 6월 30일까지 차량등록 의무
 - 환경 보조금 신청은 해당 신청서를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제출
 - 과거 소지 차량의 폐기와 새로운 차량등록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한 후 보조금 수령

- 친환경 신차구입 보조금 재정자금 증액
 - 재정자금 증액 배경
 - 독일 정부는 원래 총 60만대의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예상하고 15억유로를 환경 보조금에 대한 기한이 정해진 지원금으로 편성
 - 그러나 최근까지 접수된 환경보조금 신청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하는 등 기대 이상의 보조금 신청으로 인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2009년 3월말 이미 소진된 상황
 - 재정자금 증액 규모
 - 친환경 신차구입 보조금을 위한 재정자금은 35억유로를 증가시켜 총 50억유로로 확충

다. 독일 「시민부담경감법안」

조세동향 09-13

- 독일 연방 하원은 6월 10일 「시민부담경감법안」을 승인하였음
 - 법안의 내용은 이자지급액 공제 한도 인상, 소유권 변동시 결손금 이월공제 관련 사항 개정,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으로 이는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이자지급액 공제 한도 인상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이자지급액은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용 차감 전 이익의 30%를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이자수입을 초과하는 이자지급액의 경우 100만유로를 한도로 전액 공제가 가능함
 - 개정안에서는 이자수입을 초과하는 이자지급액에 대한 전액 공제한도를 현 100만유로에서 300만유로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이는 2007년 5월 25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발생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소유권 변동시 결손금 이월공제 불허에 대한 예외규정
 - 현행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소유권이 5년 내에 5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또한 법인의 소유권이 5년 내에 25%에서 50% 사이 변동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에 의하면 소유권 변동이 기업 회생을 위한 조직재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요건 : 조직재편은 결손기업의 파산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 결손기업의 본질적 기업구조가 훼손되어서는 안됨
 - 이 때 본질적 기업구조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는 노사간 일자리 유지에 관한 합의, 지분 변동 이후 5년간 급여 총액이 직전 5년간 지급된 연평균 급여의 400% 이상인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 발생한 지분변동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부가가치세법 개정

-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이 25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들은 현금수취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 그런데 동 매출액 기준금액은 연방주마다 차이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모든 연방주를 대상으로 500,000유로의 동일한 기준금액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임

라. 독일 「탈세퇴치법안」

조세동향 09-15

□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은 2009년 7월 10일 탈세 퇴치 법안(Steuerhinterziehungsbekämpfungsgesetz)을 승인하였음

- 법안은 OECD의 정보교환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에서의 과세 관련 투명성과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사업상 거래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조세당국의 수사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정확한 시행날짜는 법령을 통해 2009년 9월 중에 발표될 것임

□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OECD의 정보교환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과 거래를 맺고 있는 사업자는 독일 과세당국의 증빙서류 제출과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이러한 협력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 과세대상 소득에서 영업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
- 독일 비거주 법인이 10% 이상의 직·간접지분을 소유한 개인 주주의 신원 확인에 비협조적인 경우 원천징수세 경감을 허용하지 않음
-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특정 외국 금융기관들에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경우, 2008년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자본투자 소득에 대한 25%세율의 일률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독일 비거주 개인이 독일과 OECD 지침에 의거한 정보교환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의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음

마. 독일 경제성장촉진법안 승인

조세동향 09-24

- 독일 연방정부가 11월 9일 경제성장촉진법안(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을 승인함
 - 본 법안은 독일의 제3차 경기부양책으로 9월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과 자민당(FDP)으로 구성된 보수연정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조세감면책임
 -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자녀가 있는 개인, 기업, 상속인, 호텔·숙박업계로, 연간 85억유로 상당의 조세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함
-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녀공제액이 1,932유로에서 2,244유로(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는 4,488유로)로 인상됨
 - 자녀양육 및 교육공제액이 1,080유로에서 1,260유로(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는 2,520유로)로 인상됨
 -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Kindergeld)이 첫째 및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월 184유로(현행 164유로)로,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월 190유로(현행 170유로)로, 넷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월 215유로(현행 195유로)로 각각 20유로씩 인상됨
-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소유권 변동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이 완화됨
 - 개정 전에는 지분의 50% 이상이 5년 내에 직·간접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능했으나²²⁾, 개정 후에는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소

22) 25% 이상 50% 이하의 주식이전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분적으로 이월결손금 승계가 허용됨

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해졌으며, 지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밀적립금(hidden reserve)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해짐

- 이 때 비밀적립금(hidden reserve/stille Reserven)이란 주식의 구입가격에서 해당 회사의 세무상 자본액을 차감한 (+)의 잔액을 말함

- 또한 개정 전에는 2010년 이전에 파산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승계가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파산의 경우 기한의 제한 없이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해짐

- 둘째, 한시규정으로 운용되던 지급이자공제 특례규정이 영구규정으로 전환됨
 - 개정 전에는 2007년 5월 25일부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순이자비용이 300만유로 이하일 경우 특례조치에 의해 전체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가능하며, 그 외의 기간에 있어서는 순이자비용이 100만유로 이하여야 전체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가능했음²³⁾
 - 개정 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순이자비용이 300만유로 이하이면 전체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가능함
- 셋째, 즉시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확대됨
 - 개정 전에는 150유로 이하의 영업용 자산에 대해 즉시상각이 가능했으나, 2010년부터는 410유로 이하의 영업용 자산에 대해 즉시상각이 가능해짐

□ 기타 세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업세: 영업세 과세표준 계산시 개정 전에는 부동산 임차료의 83.75%를 공제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이 비율이 87.5%로 인상됨
- 부가가치세: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가 제공하는 단기 숙박서비스업에 대해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상속세
 - 사업용 자산에 대한 85%의 상속공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²⁴⁾

23) 독일의 경우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특정 과세이익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함. 단, 순이자비용이 100만유로(개정 후에는 300만유로) 이하이면 전체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가능함.

24) 독일은 가업상속 및 증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의 85%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

- 향후 5년간(현행 7년간) 과거와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계속해야 함
 - 상속 당시 고용수준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상속 이후 5년간 급여 총액이 상속일이 속한 연도의 급여 총액의 400%(현행 650%) 이상이어야 함
 - 사업용 자산 중 단순 관리되는 자산(즉, passive asset)의 비율이 50% 이상 되어서는 안 됨
- 상속 이후 7년(현행 10년)간 사업이 계속되고, 상속 이후 7년(현행 10년)간 급여 총액이 상속일이 속한 연도의 급여 총액의 700% 이상이며, 사업용 자산 중 단순 관리되는 자산(즉, passive asset)의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음
- 제2과세등급(즉,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1대 후손, 양부모, 사위 및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²⁵⁾)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현행의 30~50%에서 15~43%로 인하됨

〈독일의 상속세율〉

과세대상 취득재산의 가치(유로)	세율			
	제1과세등급 ¹⁾	제2과세등급 ²⁾		제3과세등급 ³⁾
		개정 전	개정 후	
75,000까지	7	30	15	30
300,000까지	11	30	20	30
600,000까지	15	30	25	30
6,000,000까지	19	30	30	30
13,000,000까지	23	50	35	50
26,000,000까지	27	50	40	50
26,000,000 이상	30	50	43	50

- 주: 1) 배우자, 자녀 및 입양자녀, 자녀 및 입양자녀의 후손, 사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부모와 그 선대 포함
 2) 제1등급에 속하지 않는 부모와 그 선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1대 후손, 양부모, 사위 및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
 3) 모든 다른 재산의 취득자 및 특정 목적과 연계된 증여의 경우

도록 허용하고 있음.

25) 독일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친인척도에 따라 과세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2.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조세동향 09-10

- 네덜란드 재무부는 지난 4월 20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법안이 통과된 경우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은 납세자 범주 및 과세구간의 단순화와 공제액 증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구간을 7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납세자 범주도 3개에서 2개로 축소함
 - 제1범주의 최고세율은 27%에서 20%로, 제2범주와 제3범주의 최고세율은 각각 53%, 68%이었으나 하나의 범주로 통일하고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함

개정 전				개정 후		
과세구간 (유로)	세율(%)			과세구간 (유로)	세율(%)	
	제1범주	제2범주	제3범주		배우자·자녀	그 외
22,763 미만	5	26	41	125,000 미만 125,000 이상	10 20	30 40
22,763~45,519	8	30	45			
45,519~91,026	12	35	50			
91,026~182,042	15	39	54			
182,042~364,073	19	44	59			
364,073~910,163	23	48	63			
910,163 이상	27	53	68			

주: 제1범주는 배우자와 자녀, 제2범주는 형제·자매·부모 등, 제3범주는 그 외의 자

- 상속세 공제액은 배우자의 경우 532,570유로에서 600,000유로로, 자녀의 경우 연령에 따라 4,556유로, 10,323유로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19,000유로로 인상하였음

개정 전		개정 후	
공제대상자	공제액(유로)	공제대상자	공제액(유로)
배우자	532,570	배우자	600,000
23세 미만 자녀	4,556	자녀	19,000
23세 이상 자녀	10,323		

나. 네덜란드 하원 경기부양책 승인

조세동향 09-12

- 네덜란드 하원은 2009년 6월 4일 경기부양책을 승인함
 - 이는 2009년과 2010년 기간에 네덜란드의 기업 지원 및 중·소규모 기업체들의 유동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
 - R&D 종사자의 급여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함
 - 110,000유로 이하의 급여에 대해 세액의 42%를 감면하고(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설립된 회사의 첫 3년간은 60%), 110,000유로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세액의 14%가 감면되며, 고용주당 최대 감면액은 800만유로임
 - 2009년과 2010년에 기준급여액을 110,000유로에서 150,000유로로, 최대 감면액은 800만유로에서 1,400만유로로 각각 인상함
 - 본 개정안은 소급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11년부터 인상 전의 기준급여액과 최대감면액이 다시 적용됨
 - 2009, 2010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구간 40,000~200,000유로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3%에서 20%로 인하함

소득구간(유로)	법인세율(%)	
	현행	과세연도 2008, 2009
40,000 이하	20	20
40,000~200,000	23	20
200,000 초과	25.5	25.5

-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을 현재 월 단위 납부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분기별 납부로 변경함
- 2008년 7월 1일부터 부과되던 항공권세는 2009년 7월 1일부터 폐지됨
 - 네덜란드에서 다른 EU 가입국가로의 비행, 또는 목적지까지 2,500km를 초과하지 않는 비행에 대해서는 11.25유로 부과, 그 밖의 다른 목적지까지의 비행에 대해서는 45유로를 부과하였음

다. 네덜란드 「Patent Box」 확대 방안 발표

조세동향 09-18

- 8월 21일 네덜란드 재무장관 Jan Kees de Jager는 「Patent Box」를 확대·실시하는 법령을 발표함
 - Patent Box란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일반소득과 분리하여 10%의 특혜세율로 과세하는 특례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음
 - Patent Box의 확대 시행은 R&D 활동을 수행하나 그 성과가 미비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돕기 위한 정책임
 - 지금까지 Patent Box와 관련된 손실은 10%의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25.5%의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였음
 - 일반적으로 감면대상 소득은 기타의 소득과 구분경리해야 하므로, 감면대상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법령은 Patent Box 관련 손실을 25.5%의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의 소득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손실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2009년과 2010년에 발생한 Patent Box 관련 손실에 한하여 적용됨
 - 손실은 1년간 소급공제되고, 9년간 이월공제됨
 - 본 법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함

- Patent Box는 법안 「Working on Profit」를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던 제도임
 - 도입 목적은 기술혁신과 R&D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
 - 2006년 12월 31일 이후 자체 개발되어 특허를 취득한 무형자산 사용료 소득에는 10%의 특혜세율이 적용됨
 - 2008년 1월 1일부터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했으나 적격 R&D 결과로 창출된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었음
 - 여기서 소득이란 무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자본이득과 특허 사용료임
 - 10%의 세율을 적용하려면 특허권이나 R&D 활동이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에 대해 적어도 30% 이상 기여해야 함
 -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최대 무형자산 생산비용의 4배(상한액)까지로 제한함
 - 생산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과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5%의 법인세 명목세율이 적용됨
 - 본 정책은 로고와 등록상표에는 적용되지 않음

라. 네덜란드 2010 Tax Plan 발표

조세동향 09-19

- 네덜란드 재무부는 9월 15일 2010년 Tax Plan을 발표함
 -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대부분의 건의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임
 - 본 Tax plan은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세무행정을 간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2010 Tax Pla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atent Box 정책

- Patent Box란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일반소득과 분리하여 10%의 특혜세율로 과세하는 특례규정임
- Patent Box에 적용되던 10%의 특례세율은 5%로 인하됨
- Patent Box는 Innovation Box로 그 명칭이 변경됨
-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의 상한액(무형자산 생산비용의 4배)은 폐지함
-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의 개정
 -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2009~2010년에 발생한 손실 중 연간 천만유로의 손실에 한해 적용됨
 - 결손금 이월 공제기간은 9년에서 6년으로 단축됨
- 부가급여 공제요건의 개정
 - 기존에는 모든 부가급여 항목에 대해 실비정산이 원칙이었으나, 고용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급여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류별로 공제요건을 달리함
 - 첫째, 크리스마스 선물, 자전거, 작업복 등과 같은 29개 부가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 없이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 총급여의 1.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면 공제를 허용함
 - * 즉,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사업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됨
 - 둘째, 기타의 부가급여 항목(예: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이사비용, 교육비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
 - 2011년에 도입될 예정임
- 자영업소득에 대한 표준공제 요건 중 투입시간 요건을 폐지함
 - 네덜란드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 과세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액의 비용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이전에는 1,225시간 이상을 사업활동에 투입해야 이러한 공제가 가능했으나, 세법개정으로 투입시간 요건은 폐지됨
- 부가가치세 감면세율 적용의 확대
 - 부가가치세의 일반세율은 19%이며 음식, 주류를 제외한 음료, 신문·잡지 등 생필품과 교통, 이발 등과 같은 기본 서비스 등에는 6%의 감면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15년 이상 된 주택의 도색과 미장공사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던 6%의 감면세율은 2년 이상 된 주택의 도색과 미장공사에 대한 영구적 감면세율로 개정됨
 - * 본 규정은 2009년 9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함
- 6%의 감면세율 적용대상을 하드커버 서적에서 학습용 CD-ROM, DVD, 오디오 북과 같은 전자 교육자료로 확대함
- 주거 청소 서비스(residential cleaning service)에도 감면된 세율이 적용됨
- 연비 효율이 높은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
 - 연비 효율이 매우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음
 - 연비가 매우 높은 자동차란 디젤승용차의 경우 CO₂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95g 이하인 경우, LPG승용차의 경우 CO₂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110g 이하인 경우를 의미함
 - 연비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구입시 취득세에서 700유로(과거 500유로)가 공제됨

마. 네덜란드 자동차세 개정 검토

조세동향 09-24

- 내각은 지난 11월 13일 현행 자동차세 및 자동차취득세를 폐지하고 대신 주행량에 따른 과세방식(pay-as-you-drive)을 도입하는 법안에 승인함
 - 동 법안의 취지는 교통혼잡과 CO₂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음
 - 이는 의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 2012년 발효될 예정임
- 자동차세 개정법안
 - 주요 내용
 - 자동차세²⁶⁾ 및 자동차취득세²⁷⁾를 폐지하고 대신 차량의 운행거리에 따라 과세함
 - 세율
 - 기초세율은 차량의 크기, 중량, CO₂ 배출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혼잡시간에 또는 혼잡도로에서 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향 조정됨

26) 현행 자동차세는 차량유형, 중량 및 소비연료의 종류에 따라 과세되고 있음.

27) 현행 자동차취득세는 자동차 소매가격 중 약 25% 정도에 해당함.

- 2012년 평균 운전자의 기초세율은 €0.03/km로, 매해 인상되어 2018년에는 €0.067/km가 적용될 예정임
- 적용제외 대상
 - 버스, 택시, 장애인용 차량, 농기구, 오토바이, 구형 자동차의 경우 주행량에 따른 과세방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정보 확보방안
 - 중앙 과세당국은 모든 차량에 장착된 GPS 장치를 통해 개별 차량의 이동시간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음
 -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게 됨
 - 한편,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것이며 정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기대효과
 - 자동차세를 주행량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통행량 감소(15%), 교통혼잡 감소(50%), 교통사고 감소(7%) 및 CO₂ 배출량 감소(10%)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개정 법안으로 약 60% 정도의 운전자에게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운행량이 많고 주로 혼잡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조세부담은 증가하여 총조세수입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3. 프랑스

가. 프랑스 경기부양 종합대책

조세동향 09-01

- 프랑스 대통령 Nicolas Sarkozy는 지난 2008년 12월 4일 현 국제적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경기부양 종합대책(massive stimulus package)을 발표
 - 이는 260억유로 규모로 프랑스 GDP의 약 1.3%에 달하며,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에 초점이 맞춰짐
 - 구체적으로 114억유로는 VAT 조기 환급 및 R&D 세액공제의 환급에, 105억유로는 공공부문 투자지원에, 19.6억유로는 고용지원에, 18억유로는 주택건설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
 - 각 분야별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민간부문 투자지원
 - 2009년부터 VAT 환급액의 조기지급 및 R&D 세액공제의 환급을 통해 민간에 114억유로를 제공
 - 현재 프랑스에서는 연구개발비 중 35~50%를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종합대책에 의하면 R&D 세액공제액이 계산된 이후 3개 과세기간 동안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게 즉시 환급예정
 - 손실법인 및 R&D 세액공제액을 차감할 만큼 법인세 납부세액이 충분하지 않은 법인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
 - 신규투자에 대해 사업소세(taxe professionnelle) 전액 면제

- 공공부문 투자지원
 - 기간시설(infrastructure), 영구 시설물(développement durable), 문화유적(patrimoine), 고급 연구·국방산업 등 4분야에 투자지원
 - 공공부문 직접투자 및 EDF나 GDF Suez와 같은 대기업에 의한 간접투자에 각각 40억유로를 할당

- 약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약 25억유로 규모의 VAT 조기 환급을 허용

□ 고용지원

- 7억 규모의 감세조치를 통해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2009년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최소임금의 1.6배까지 보상하는 것이 가능
- 해고된 근로자의 직업교육 등을 위해 5억유로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 실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RSA, Revenu de solidarité) 외에 2009년 첫 세 달 동안 200유로의 현금을 지원
- 이는 7.6억유로 규모로 약 38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주택건설 지원

- 2009~2010년 동안 주택건설, 신규주택구입을 위한 제로금리 대출 확대, 교외지역의 재개발 등에 14.5억유로를 지원
- 거주지 개선사업과 환경위생 사업에 2억유로를 지원
- 숙박시설(accommodation)등에 1.6억유로를 지원

□ 자동차산업 지원

- 프랑스의 자동차 업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보조금(rebate)을 1,000유로로 인상
- 이는 2.20억유로 규모로 CO₂ 배출량이 160g/km 이하인 차량에 한함
- 제조사와 정부가 3억유로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설립하여 하도급업체 지원

나. 프랑스 탄소세 도입 논의 등

조세동향 09-13

- 프랑스에서는 2011년 탄소세(national carbon tax)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EU 차원의 탄소 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 제정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2009년 6월 초에는 탄소배출권(carbon emissions permits)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음

□ 탄소세 도입 논의

- 프랑스에서는 7월 2일 및 3일 양일에 거쳐 환경부와 재무부 주최로 탄소세 도입 관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그 준비과정에서 지난 6월 10일에는 탄소세법 개정안이 발행된 바 있음
 - 탄소세의 도입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미 2007년 10월 급여세 인하에 대한 재정 충당 목적으로 제안한 바 있음
 - 하지만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된 바 없으며, 회의에서는 특히 탄소세의 적용대상과 시행방법을 두고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탄소 국경조정세 제안

- 프랑스는 탄소 배출에 대한 제재가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재화를 대상으로 EU 차원의 세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국경조정세는 EU에서 제조된 제품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재가 없는 국가에서 생산된 저가의 제품과 비교하여 EU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함
 - 하지만 이는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보호주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년 하반기 EU의 승인을 얻는 데 실패한 바 있음

□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6월 초 예산처 장관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함
 - 프랑스에서 탄소배출권은 BlueNext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량은 2009년 5월 일평균 9.4백만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임
- 탄소배출권을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fraud)에 대한 염려에서임
- 동 세법 개정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더욱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다. 프랑스 레스토랑에 대해 부가가치세 인하

조세동향 09-15

- 정부는 2009년 7월 1일부터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19.6% → 5.5%²⁸⁾)하기로 함
 - 프랑스에서 레스토랑 산업은 패스트푸드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오랫동안 부가가치세 인하 캠페인을 해왔음
 - 또한 정부는 레스토랑 서비스를 EU 부가가치세 규정에서 경감세율 적용대상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7년간 법안 통과 운동을 벌인 바 있음
 - 부가가치세 인하 결정은 지난 2009년 5월 5일 EU 위원회에서 Council Directive 2009/47/EC를 채택한 데에 따른 결과임
 - 동 지침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대상인 노동집약 서비스(labor intensive services) 항목에 레스토랑과 요식업 서비스가 추가되었음

-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로 프랑스에서는 연간 EUR 20억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레스토랑 단체는 미래를 위한 약정(“contract for the future”)을 통해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혜택을 서비스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함
 - 프랑스의 경우 레스토랑은 부가가치세를 메뉴 가격에 포함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인하된 만큼 가격을 낮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라. 프랑스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조세동향 09-19

-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이 곧 내각(the Cabinet)의 승인을 얻어 공개될 예정임
 -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사업소세(local business tax) 개정, 화석연료 소비자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 도입, 탈세(tax evasion)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등임

28) 프랑스에서 부가가치세 표준세율(standard rate)은 19.6%이며, 경감세율(reduced rate)로는 5.5%를 적용하고 있음.

□ 사업소세(local business tax) 개정

○ 현행 규정

- 사업소세는 프랑스에 소재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직전 전년도에 사업용으로 사용된 유형고정자산(tangible fixed assets)의 임대가치에 대해 부과²⁹⁾하는 지방세임
- 이는 지방세수의 50%를 차지하여 지방의 재정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투자를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개정 및 폐지 논의가 있었음

○ 개정 내용

- 명칭을 지역경제세(territorial economic tax, TET)로 변경하고 이에 사업소세(local business tax, LBT)뿐만 아니라 부가세(additional tax, AT)를 추가함
- 사업소세(LBT) 부분에서 과세대상을 건물 및 토지에 한정하고 기계설비 등 동산부분을 제외하며, 산업자산의 임대가치를 현행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치보다 15%만큼 경감함
- 부가세(AT) 부분에서 세율을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0%부터 1.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함³⁰⁾

□ 탄소세(carbon tax) 도입

○ 2010년 1월 1일부터 화석연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탄소세가 도입될 예정임

- 단, 경제위기를 고려하여 기존에 논의되었던 세율인 탄소배출량 톤당 32유로에서 대폭 낮춰 톤당 17유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임

□ 탈세(tax evasion)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 내각은 탈세 및 조세피난처 대응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를 고려중에 있음

- 조세피난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

29) 이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의 3.5% 범위 내에서 부과됨.

30) 매출액이 50만유로 미만인 경우 부가세(AT) 부분을 면제하며, 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를 적용함.

- 0~35%에서 50%로 인상함
- 조세피난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수료 및 유사 비용 중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부분³¹⁾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에 대해서는 참가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regime)³²⁾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음

4. 핀란드

가. 핀란드 경기부양책

조세동향 09-05

-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30일 고용확대 및 교육·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약 2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채택
 -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는 2009 예산에서 제안된 정책과 합하면 약 30억유로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GDP의 1.7%로 EU 회원국 중 세 번째 규모인 것으로 평가
- 경기부양정책의 주요내용
 -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24%에서 2009년 4월 1일부터 0.8%p 인하
 - 2010년 1월 1일부터 인하율은 더 확대되고, 사회보장기여금의 일부로 징수되는 국민노년연금(national old-age pension)은 폐지될 예정
 - 공장, 작업장 및 생산설비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률을 두 배로 인상
 - 이는 2009년 및 2010년 동안의 취득분에 대해서만 적용
 - 고용 확대를 목표로 도로 및 철도 공사 등의 국책사업(state projects) 진척 및 착수
 - 주택 건설 및 수리에 대한 국가보조 확대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출 이자 보조

31)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현재 과세관청에 있음.

32) 프랑스 세법에 의하면, 참가면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수취 배당금 중 95%가 과세 면제됨.

-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재정을 3,900만유로 만큼 확대
 - 특히 직업교육기관 등 학생을 위한 보조 확대
- 핀란드 은행에 대해 국가보증(state guarantees) 제공
 - 2008년 12월 의회가 승인한 규모를 보면 이는 5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주식시장의 회복을 위해 국가연금기금(State Pension Fund)이 재정적으로 견실한 대기업의 신종 기업어음(commercial papers)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
- 사업자 및 농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세액경감(special tax relief)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직전 과세연도 말 사업에 사용된 순자본의 20%(또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10% 적용)는 자본이득으로 보아 28%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누진세율로 과세
 - 하지만 이와 같은 과세체계는 저소득층에게 적용할 경우 모든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유발할 수 있음
 - 2010년부터 납세자는 사업소득 및 농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신청이 가능
-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지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를 농부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면제

나. 핀란드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인하

조세동향 09-06

- 2009년 3월 11일 핀란드 의회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 보장기여금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
 - 핀란드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30일 약 2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채택하여 고용과 교육·연구 분야를 집중지원
 - 당시 채택된 경기부양책의 고용 관련하여 제안된 내용은 본 법안을 통해 구체화
- 법안의 주요내용
 - 효력발생기간 및 적용대상
 - 본 법안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료에 적용될 것임

○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율

세율	등급 I		등급 II		등급 III	
	현재	법안 효력발생 이후	현재	법안 효력발생 이후	현재	법안 효력발생 이후
	2.801%	2%	5.001%	4.2%	5.901%	5.1%
적용 요건	i) 새로 설립된 회사		2007년 감가상각의 총액이 50,500유로 이상으로, 이 총액은 동시에 지불 봉급이나 임금의 최소 10%에 해당해야 함. 그러나 30%보다는 많으면 안 됨		2007년 감가상각의 총액이 50,500유로 이상이며, 동시에 이 총액이 지불 봉급이나 임금의 30%보다 더 많을 경우	
	ii) 2007년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총액이 50,500유로보다 적은 경우					
	iii) 2007년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총액이 50,500유로를 넘으나, 그 감가상각 총액이 지불 봉급이나 임금의 10%보다 적을 경우					

□ 향후 방향

- 사회보장기여금의 일부로 징수되는 국민노년연금(national old-age pension)은 2010년부터 폐지될 예정³³⁾
- 핀란드 정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금보험기여금(pension insurance contributions)을 1.6%p 인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

다. 핀란드 「Law on Tax Account」 개정안 승인

조세동향 09-16

□ 핀란드 의회는 6월 3일 「Law on Tax Account」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법인 납세자들에게 납세계좌를 도입하여 단일 계좌에서 납세관련 모든 사항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함
 -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이러한 납세계좌를 도입할 예정임

33) 핀란드의 고용주들은 국민노년연금과 건강보험기여금(health insurance contribution)을 포함한 사회보장기여금을 지불하고 있음.

- 다양한 세금의 신고일 및 납세일을 매달 지정된 하나의 날짜로 통합함
 -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월의 12일, 일반신고의 경우 신고월의 7일이 통합된 지정일임
 -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서 양식을 개정함
 -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정보 이외에도 납세자가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과 과세연도 기간에 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감면액을 기록하도록 함
 - 연간 총매상액이 25,000유로 이상 50,000유로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매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변경함
- 본 법안의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비거주자 원천세, 목재판매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원천과세 같은 자발적 납부형식의 세금에 적용할 계획임
- 부동산세, 양도세, 산림세, 상속·증여세 등에는 추후 적용될 것이며 적용날짜는 미확정임

라. 핀란드 2010 예산안

조세동향 09-20

- 핀란드 정부는 2009년 9월 15일 2010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임
 - 본 예산안의 주요 세제정책 방향은 소득세 과세표준의 상향 조정 및 세율 0.5%p 인하 등을 통해 가계 구매력·고용·내수를 촉진하며,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 2010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고, 소득세 세율이 0.5%p씩 낮아짐

(단위: 유로, %)

소득세			
과세표준(EUR)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13,100~21,700	15,000~22,600	7	6.5
21,700~35,300	22,600~36,800	18	17.5
35,300~64,500	36,800~66,400	22	21.5
64,500이상	66,400이상	30.5	30

-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대중교통 티켓(public transport tickets)은 1년에 1인당 200유로까지 면세됨
 - 대중교통 티켓의 가격이 600유로에서 3,400유로 사이인 경우, 이에 대한 피고용자의 과세금액은 400유로임
- 집과 작업장 사이를 오가는 교통경비는 모든 고용자에게 공제 가능함
-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1,480유로에서 2,200유로로 인상함
-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위해 납부하는 국가노령연금은 폐지됨
- 부가가치세 세율 개정
 -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을 22%에서 23%로 인상함
 - 기본음식과 동물사료에 대해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을 12%에서 13%로 인상함
 - 음식배달(Catering) 서비스 및 완전 조리되어 제공되는 음식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22%에서 13%로 인하함
 - 의약품, 서적, 문화행사에 적용되던 감면세율이 8%에서 9%로 인상됨
 - 개정된 세율은 2010년 7월 1일부터 통용될 것임
- 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 및 사탕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 세율은 10%에서 15%로 인상됨
 - 사탕에 소비세가 도입될 예정임
- 휘발유 밴(van)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엔진 크기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함
 - 본 규정에서 과세는 2011년 3월부터 시행될 것임

5. 영국

가. 영국 2009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09-09

-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월 22일 2009예산안(Budget 2009)을 의회에 제출함
 - 세법 개정관련 주요 정책기조는 경제위기에 따른 후속 지원, 재정건전성을 위한 선별적인 증세, 저탄소성장 지원 등임

- 2009 예산안상 세법 개정 사항을 주요 정책기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2009예산안
(1) 경제위기에 따른 후속 지원정책	
법인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율 인상(21%→22%)의 적용시점을 2010년 4월 1일까지 연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납세지원서비스(Business Payment Support Service)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급계획에 따른 세금납부를 허용할 목적으로 도입한 기업납세지원서비스를 확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GBP 50,000을 한도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 이는 법인의 경우 2008년 11월 24일부터, 비법인 사업체의 경우 2008-09 사업연도 및 2009-10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속상각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4월부터 신규 투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첫해 연도에 40%의 가속상각을 허용함 - 이는 요건을 갖춘 공장 및 기계에 GBP 50,000을 초과하여 투자한 법인에 대해 적용함 ○ 친환경 감가상각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4월부터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CO₂ 배출량에 따른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배당에 대한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7월 1일부터 해외배당에 대해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함
개인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저축 계좌(ISA)의 투자한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4월 6일부터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가 면제되는 ISA에의 연간 투자한도금액을 인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ISA의 경우 현 GBP 7,200에서 GBP 10,200으로 인상하고, 현금 ISA의 경우 현 GBP 3,600에서 GBP 5,100으로 인상함 - 또한, 50세 이상인 개인에 대해서는 이를 2009년 10월 6일부터 적용함

구분	2009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인상 - 자녀당 공제금액을 2010년 4월부터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된 공제금액보다 GBP 20을 더 인상함
기타 간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등록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 2009년 5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과세매출액 기준금액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인상함(GBP 67,000→GBP 68,000) ○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면제 기준금액 인상 - 취득가액이 GBP 175,000(현 GBP 125,000) 이하인 주택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함 : 기준금액 인상은 2009년 4월 2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함

(2) 재정건전성을 위한 선별적인 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세율 구간 추가 - 2010년 4월부터 소득세 과세구간에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추가하여 소득세 과세구간을 현 두 단계에서 세 단계로 확대함 : 이는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 목적임 													
	<p>〈영국의 개인소득세율〉</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head> <tr> <th rowspan="2">과세표준(GBP)</th> <th colspan="2">세율(%)</th> </tr> <tr> <th>개정 전</th> <th>개정 후</th> </tr> </thead> <tbody> <tr> <td>37,400</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20%¹⁾</td> </tr> <tr> <td>37,400 ~ 150,00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40%²⁾</td> <td style="text-align: center;">40%²⁾</td> </tr> <tr> <td>150,000 ~</td> <td style="text-align: center;">50%³⁾</td> </tr> </tbody> </table> <p>주: 1) 저축소득에 대해서는 GBP 2,440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 2) 배당소득의 경우 32.5%의 세율을 적용 3) 배당소득의 경우 42.5%의 세율을 적용</p>	과세표준(GBP)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37,400	20% ¹⁾		37,400 ~ 150,000	40% ²⁾	40% ²⁾	150,000 ~	50% ³⁾
과세표준(GBP)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37,400	20% ¹⁾													
37,400 ~ 150,000	40% ²⁾	40% ²⁾												
150,000 ~		50% ³⁾												
개인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자에 대한 인적공제 폐지 - 과세표준이 GBP 100,000을 초과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2010년 4월부터 소득세 인적공제를 서서히 폐지함 ○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pension contributions)공제 제한 - 2011년 4월부터 소득이 GBP 150,000 이상인 개인에 대해서는 연금공제를 기본세율인 20%로 제한함 													
기타 간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및 담배소비세를 2% 인상함 													

(3) 저탄소성장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세(fuel duty) 인상 - 2009년 9월 1일부터 주요 연료세를 리터당 2펜스를 인상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4월 1일 리터당 1펜스를 인상함 						
	<p>〈영국의 주요 연료세〉</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head> <tr> <th>구분</th> <th>2009년 4월 1일 이후 적용 (£/litre)</th> <th>2009년 9월 1일 이후 적용 (£/litre)</th> </tr> </thead> <tbody> <tr> <td>무연가솔린</td> <td style="text-align: center;">0.5419</td> <td style="text-align: center;">0.5619</td> </tr> </tbody> </table>	구분	2009년 4월 1일 이후 적용 (£/litre)	2009년 9월 1일 이후 적용 (£/litre)	무연가솔린	0.5419	0.5619
구분	2009년 4월 1일 이후 적용 (£/litre)	2009년 9월 1일 이후 적용 (£/litre)					
무연가솔린	0.5419	0.5619					
기타 간접세							

구분	2009예산안	
	중유	0.5419
경유	0.63191)	0.6519

주1) 2009년 5월 1일 이후 적용

- 쓰레기매립세(landfill tax) 인상
 - 쓰레기매립세의 표준세율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4월 1일 톤당 GBP 8만큼 지속적으로 인상함
 - 한편, 비활성 쓰레기에 적용되는 톤당 GBP 2.50의 저세율은 2010-11년 동안 동결함
-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 구간 수 확대 및 인상
 - 저탄소 차량의 구입 및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2001년 3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09년 5월부터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 구간 수를 7개에서 13개로 확대함
 - : 이는 운전자가 선호하는 차종 중에서 저탄소 사양을 중심으로 차량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10년 4월부터는 동 유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3개 구간간 세율 차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임
 - 또한 2010년 4월부터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초연도 세율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저탄소 차량 구매를 더욱 촉진함

〈영국의 개인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소비세¹⁾〉

과세구간	CO ₂ (g/km)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최초연도 세율 ²⁾	표준세율	
A	~100	£0	£0	£0	£0	£0
B	101~110	£35	£35	£0	£20	£20
C	111~120		£35	£0	£30	£35
D	121~130	£120	£120	£0	£90	£90
E	131~140		£120	£115	£110	£110
F	141~150		£125	£125	£125	£125
G	151~165	£145	£150	£155	£155	£155
H	166~175	£170	£175	£250	£180	£180
I	176~185		£175	£300	£200	£200
J	186~200	£210	£215	£425	£235	£235
K	201~225		£215	£550	£245	£245
L	226~255	£400 ³⁾	£405	£750	£425	£425
M	255~		£405	£950	£435	£435

- 주: 1) 2001년 3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 적용
 2) 신규구입 차량에 대해 적용
 3) 2006년 3월 23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 적용

나. 영국 경기침체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

조세동향 09-16

- 감사국(National Audit Office)이 지난 2009년 7월 20일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침체 및 그에 따른 감세정책으로 '08~'09 회계연도 동안 영국 국세청이 징수한 세수는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217억파운드나 급격히 감소함³⁴⁾
 - 세목별 직전연도와 비교한 세수변동액 및 그 요인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세목	세수변동액 (직전연도 대비)	비고
법인세	£50억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및 가스가격 상승으로 국외법인으로부터 세수가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국내법인(대부분 금융 분야)으로부터 세금이 덜 걷혔음을 반영함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57억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감소는 세율인하 및 기본공제액 인상조치에 따른 것임 - 2008년 4월 1일부터 세제 단순화 차원에서 개인소득세 기본세율(22→20%)을 인하하고 최저세율 구간(10%)을 폐지함 - 개인소득세 최저세율 구간(10%) 폐지에 따라 저소득층의 손실을 보상해 줄 목적으로 2008년 4월 6일부터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GBP 600만 큼 인상함
부가가치세	£64억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세수감소는 동 회계기간의 하반기 동안 악화된 경기상황과 아울러 2008년 12월부터 적용된 부가가치세율 인하조치(17.5→15%)¹⁾로 발생함
인지세 (stamp taxes)	£61억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billion은 거주재산 및 상업재산의 거래량 감소로 인한 것임 ▪ £1billion은 주식가격 하락으로 발생함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27억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이득세 세수증가는 체감공제(taper relief)의 폐지²⁾에 앞서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투자자가 직전연도의 조세채무를 당기에 납부함으로써 발생함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	£9억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및 가스가격의 인상에 따른 것임

주: 1)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2) 2008년 4월 6일부터 자본이득세를 18%의 단일세율 체제로 개편하며 체감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규정을 폐지한 바 있음

34) 참고로, 2007-2008 회계연도 동안 영국 국세청(HMRC)이 징수한 세수는 4,511억파운드로 감소규모는 4.8% 가량에 달함.

- 또한 경기침체로 조세체납액 규모 역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277억파운드(2009년 3월 31일자)로 직전연도와 비교하여 27억파운드만큼 증가한 수치임
 - 보고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및 미납부자의 수가 증가했으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율도 감소했음
- 영국 국세청(HMRC)은 체납관리의 개선을 위해 체납자를 분석하여 기존 체납실적, 위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한 징수를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조정자 프로그램(Pacesetter Program)을 통해 체납관리 능력을 신장시켜 징세활동을 추진하고 체납관리 콜센터를 확장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의 핵심 체납관리 시스템으로 할 예정임

다. 영국 2009 Pre-Budget Report

조세동향 09-25

- 재무장관은 지난 2009년 12월 9일 2009 예비예산안(2009 Pre-Budget Report)³⁵⁾을 의회에 제출함
 - 2009 예비예산안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4년 내에 정부 차입금(borrowing)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업과세 및 개인과세 관련 주요 세법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업과세(business taxation) 분야
 - 법인세율
 -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계획(21%→22%)을 1년간 연기하여 2010회계연도에 대해서도 21%를 계속 적용함
 - 은행업 과세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 은행업 과세와 관련하여 은행이 법 형식뿐만 아니라 법 정신 역시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과세 실행규범을 발행함

35) 예비예산안(Pre-Budget Report)은 차기연도의 봄에 예정된 본예산이 있기까지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경제상황 및 재정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허권 소득
 - 2013년 4월부터 특허권 소득에 대해 법인세 저세율을 적용함
- 연구개발비 공제(R&D relief)
 - 연구개발비 공제요건 중 공제신청 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적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함
- 개인과세(individual taxation) 분야
 - 개인소득세율
 - 2010년 4월부터 소득세 과세구간에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추가하여 15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함³⁶⁾
 - 종업원에 대한 급여세(payroll tax)
 - 현재 영국에서는 급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 2009년 12월 9일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은행 및 건축조합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2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재량 상여금(discretionary bonus)에 대해 50%의 급여세를 부과함
 - 국외 탈세(offshore evasion)
 - 특정 지역에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납세자에 대해 도입된 국세청(HMRC) 통지의 무를 별도의 가산세 제도(penalty regime)와 함께 운영함
 - 연금공제(pensions relief)
 - 2011년 4월부터 총소득이 15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공제를 제한함
 - 총소득은 고용주 부담분을 포함한 모든 연금불입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36) <영국의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파운드)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37,400	20 ¹⁾	
37,400 ~ 150,000	40 ²⁾	40 ²⁾
150,000 ~		50 ³⁾

주: 1) 저소득에 대해서는 2,440파운드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

2) 배당소득의 경우 32.5%의 세율을 적용

3) 배당소득의 경우 42.5%의 세율을 적용

- 2011년 4월부터 종업원, 고용주,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보험료율을 0.5% 인상함

□ 간접세(indirect taxation) 분야

○ 부가가치세(VAT)

-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17.5%→15%)가 2009년 12월 31일 종료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17.5%의 표준세율로 복귀함

6. 그리스

가. 그리스 경기부양책 발표

조세동향 09-07

□ Konstandinos Karamanlis수상은 지난 2009년 3월 18일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일회성의 비과세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일회성의 특별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

○ 공공부문 근로자 및 연금수령자에 대해 다음의 비과세 장려금(one-time tax-free payments)을 지급

〈경기부양책: 비과세 장려금〉

구분	월소득(EUR)	지급액(EUR)
공공부문 근로자	~ 1,500	500
	1,500 ~ 1,700	300
공공부문 연금수령자	~ 800	500
	800 ~ 1,100	300

○ 연소득이 60,000유로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특별세(one-time special tax)를 부과

〈경기부양책: 특별세〉

연소득(EUR)	특별세(EUR)
60,000 ~ 80,000	1,000
80,000 ~ 100,000	2,000
100,000 ~ 150,000	3,000
150,000 ~	5,000

- 이와 아울러 의회 의원의 2009년 급여를 5% 삭감
 - 이는 국가사회연대기금(National Social solidarity Fund)에 적립하여 장기실업자 및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

나. 그리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안 발표

조세동향 09-15

- Ioannis Papathanasiou재무부 장관은 지난 2009년 6월 25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안을 발표함
 -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세(special tax) 부과 조치와 연장선상에 있음
 - 정부는 2009년 3월 18일 연소득이 60,000유로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일회성의 특별세(one-time special tax)³⁷⁾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 정부는 증세 결과 2008년 5%를 초과하던 재정결손이 2009년 3.7%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7) 연소득별 특별세 부과액은 다음과 같음

연소득(EUR)	특별세(EUR)
60,000 ~ 80,000	1,000
80,000 ~ 100,000	2,000
100,000 ~ 150,000	3,000
150,000 ~	5,000

□ 증세안의 주요 내용

-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 자동차에 대해 특별세(special annual tax)를 부과함
- 길이가 10m를 초과하는 휴양보트에 대해 이동세(circulation tax)를 부과함
- 연료에 대한 특별세(special tax on fuel)를 인상함
- 복권 당첨금(lottery winnings)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함
- 대외원조 지출을 1.2억유로 만큼 축소함
- 중대한 조세회피를 강력히 단속하고 납세순응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약 4.4억유로의 세수를 확보함

다. 그리스 법인세 추가 분담금 부과

조세동향 09-23

□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3일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회성의 법인세 추가 분담금(one-time additional tax)을 부과할 것임을 발표함

- 법인세 추가 분담금으로 약 1억유로의 세수확보가 예상되며, 이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에 사용될 계획임

□ 법인세 추가 분담금 상세내용

- 부과대상
 - 2008년 순이익이 500만유로를 초과하는 약 300개 기업
- 세율
 -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순이익이 500만유로 초과 1,000만유로 이하 : 5%
 - 순이익이 1,000만유로 초과 2,500만유로 이하 : 7%
 - 순이익이 2,500만유로 초과 : 10%
- 납부
 - 8개월간 분납(8 monthly instalments)이 가능함
 - 단,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5%만큼 할인이 적용됨

7. 벨기에

가. 부가가치세 월별 환급 대상자 확대

조세동향 09-04

- 벨기에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월별 환급 대상자를 확대
 - 벨기에에는 부가가치세를 월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능

〈VAT 월별 환급대상자〉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환급은 수출 및 역내거래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환급대상자를 매출액의 30% 이상이 다음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에게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래(예를 들어, 외국법인과의 부동산 거래 등) - 국외에서 수행되는 거래(예를 들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인적용역) - 건설부문에서 6%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거래

나. 벨기에 경기회복법

조세동향 09-10

-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7일 근로 및 환경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담은 경기회복법(Law for the Recovery of the Economy)을 발표함
 -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임

1) 환경지원 세제정책

- 에너지절약투자 지원
 -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투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해 1.5%의 이자를 세액공제를 통해 보조함

- 그리고 1.5%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40%를 공제함
-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40%를 과세기간당 2,000유로를 한도로 공제하며, 태양에너지투자에 대해서는 600유로를 추가로 공제함
- 또한 미사용액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자전거통근 지원

- 고용주가 종업원의 자전거통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km당 첫 0.2유로에 대해 과세면제 함
- 또한 고용주가 지급하는 자전거 구입 및 관련 유지비는 비과세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이는 위의 보조금에 대한 과세면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함
- 고용주는 자전거 및 관련 설비 구입비용에 대해 120%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2) 근로지원 세제정책

□ 원천세(withholding tax on remuneration)

- 고용주의 급여 원천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함
 - 단, 신고기한은 그대로 유지함
- 일부 부문에서 고용주의 원천세 납부의무 면제³⁸⁾폭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부문에서 고용을 촉진함
 - 연구 및 개발 인력을 고용한 회사에 대해 원천세 중 75%(현 65%)를 징수면제함
 - 근로자당 6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원천세 징수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2009년 1월 1일부터 100시간, 2010년 1월 1일부터 130시간으로 확대함
 - 2009년 6월 1일부터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 수당 중 15.6%(현 10.7%)를 원천세 징수의무에서 면제함

38) 이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전액 원천징수하되, 재무부에는 이 중 일부만을 납부하는 방식임.

□ 점심보조금(lunch voucher)

- 점심보조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의무에서 면제됨
 - 하지만 이를 지급하는 고용주입장에서는 과세목적상 공제되는 비용은 아님
- 점심보조금 지급한도를 1유로만큼 확대하고(4.91 → 5.91유로) 동 인상분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비용으로 공제해 줌

□ 스톡옵션(stock options)

- 스톡옵션³⁹⁾의 행사기간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 사이 부여된 옵션에 대해 5년을 연장함
 - 옵션 행사기간의 연장을 위해 기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종업원과 합의를 보아야 하며, 이를 2009년 7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알려야 함
 - 그리고 이는 종업원당 10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옵션가치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신용보험(credit insurance)

- 신용보험계약의 보험료에 징수되는 9.25%의 세금을 폐지함

다. 벨기에 2010 예산안

조세동향 09-21

-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1일 경기회복을 위한 감세에 초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39) 벨기에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옵션의 행사시점이 아닌 권리부여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음. 옵션이 부여되는 시점에 주식가치의 7.5%만큼 소득세가 과세되며, 종업원이 해당 옵션을 행사하거나 관련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음.

□ 법인세

- 참가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 참가면세제도에 의하면 배당소득 중 95%가 과세 면제되는데, 그 요건으로는 지분을 요건(10% 이상)과 금액요건(1,200만유로 이상)이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신용기관, 보험회사,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배당소득공제 요건으로 금액요건만을 적용함
-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 후 첫 3년 동안 발생한 법인세 중간예납 미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 및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세액공제와 이자공제를 승계받을 수 있음

□ 개인소득세

- 식사, 스포츠, 문화 및 환경쿠폰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 면제함
 - 단, 쿠폰은 근로소득, 이자 및 기타소득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야 함
- 기부금공제 적용 대상기관을 대학병원, 연구기관, 노인·장애인 등의 요양시설, 장애인 고용기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에 설립된 유적 및 자연 보호기관으로 확대함
 -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함
- 전기차량, 오토바이 및 삼륜차량에 대해 취득가액의 15%를 세액공제함
 - 단, 전기차량의 경우 3,280유로, 오토바이 및 삼륜차량의 경우 2,000유로를 한도로 공제함
- 연소득이 12,3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운동선수, 교관, 심판원에게 적용되는 33%의 단일세율을 15세 초과 26세 미만인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16.5%로 인하 적용함
-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연금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벨기에에서 과세됨
 - 연금 불입금이 벨기에에서 공제된 경우
 - 벨기에에서 수행한 근로의 대가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8. 노르웨이

가. 노르웨이의 경기부양 종합대책

조세동향 09-03

-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26일 2009 예산(2009 Budget)의 수정을 통해 NOK20 billion 규모의 경기부양 종합대책(crisis package)을 발표했으며, 이는 2월 중순 의회에서 승인될 예정
- 주요 세법개정사항
 -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 현행 규정에 의하면 결손금은 무기한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소급공제의 경우 회사가 청산한 경우에만 가능
 - 개정안에서는 2008년 및 2009년 한시적으로 각 사업연도 결손금 중 NOK500만을 한도로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해 소급공제 하는 것을 허용
 - 연구개발 세액공제(research and development credit) 한도 확대
 - 현행 규정에 의하면 Norwegian Research Council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중 2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가능
 -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자체 연구의 경우 NOK400만에서 NOK550만으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NOK800만에서 NOK1,100만으로 인상

나. 노르웨이 2009수정예산안

조세동향 09-12

-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5월 15일 2009 수정예산안을 발표함
 - 수정예산안에는 부가가치세율⁴⁰⁾ 인하,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⁴¹⁾ 인하, 감가상각제도 완화 등 경기부양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

40) 노르웨이의 현행 부가가치세율은 25%임.

41) 노르웨이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세율은 지역마다 다양하며, 최고 14.1%까지 부과되고 있음.

- 하지만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경제위기 관련 정책은 제외됨
- 대신 세법 개정 관련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담고 있음

□ 3% Rule

- 노르웨이에서 참가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system)는 5년 전에 도입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의 경우 지급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고 수취법인 입장에서는 과세가 면제된다는 것임
 - 하지만 이와 같은 처리는 너무 관대한 측면이 있어 2008년 동 과세면제 대상 소득 중 3%를 과세소득으로 보는 규정이 도입되었음
- 그런데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면 3% Rule에 따른 과세소득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
 - 이론상으로는 노르웨이의 거주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수취하고 그 중 3%가 노르웨이에서 과세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하지만 정부는 동 3%의 과세소득은 노르웨이에서 부여한 과세면제를 취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외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그룹회사 보조금(Group Contributions)

- 현행 규정
 - 그룹회사 보조금 규정(Group Contribution Rules)에 의하면, 그룹회사⁴²⁾ 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취회사는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함
 - 단, 보조금 지급회사가 비용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⁴³⁾ 일반적으로 수취회사는 과세면제를 적용받게 됨
 - 하지만 정유회사⁴⁴⁾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조금 지급회사

42) 그룹회사는 모두 노르웨이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노르웨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다른 EEA국가의 거주자이어야 함

43) 보통 보조금이 지급회사의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함

가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수취회사는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함

○ 개정안

- 조세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유회사에 대해서도 일반회사와 같이 지급회사가 비용으로 공제한 보조금에 한해 수취회사의 소득으로 과세함

□ 3% Rule의 도입으로 지급회사가 결손인 경우⁴⁵⁾ 그룹회사 간 배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해졌음

- 보조금 지급의 경우 지급회사가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했다면, 전액 과세면제되며 배당과 같이 일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 특히, 정유회사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동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과 배당 지급을 둘러싼 조세계획(tax planning)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기타 세법 개정 사항

- 종업원에 대한 비과세 복리후생비 한도를 인상함(NOK600 → NOK1,000)
- 단, 고용주가 관련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다. 노르웨이 2010예산안(Budget Bill for 2010)

조세동향 09-22

□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13일 2010예산안(Budget Bill for 2010)을 의회에 제출함

-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부유세(net wealth tax)

- 부유세 과세최저한을 현 NOK470,000에서 NOK700,000으로 인상함
- 그 결과 부유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수가 120,000명만큼 감소하고 약 NOK7억 6천만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44) 정유회사의 경우 28%의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50%의 특별세를 납부함. 이 때 50%의 특별세는 별도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계산함.

45) 또는 지급회사의 과세소득이 보조금을 공제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주택 및 사업용 토지에 대해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함
 - 거주주택(별장, 농장 및 해외 주택 제외)은 주택의 규모에 기초하여 평가하며 이는 지리적 위치, 주택의 종류, 건설연도 등에 따라 조정됨
 - 사업용 토지는 지리적 위치, 토지규모 및 유형에 기초한 규정된 공식에 따라 평가함⁴⁶⁾
 - 단, 주택의 평가액은 추정 시장가치의 30%, 토지의 평가액은 추정 시장가치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운회사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현행 규정
 - 해운회사는 특별 과세제도(special tax regime)에 따라 해운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고 대신 톤세(tonnage tax regime)를 적용할 수 있음
 - 단, 외화헤지거래로 발생한 자본손익 등 순투자소득의 경우 일반 법인세율(현 28%)로 과세되고 있음
- 개정안
 - 해운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외화헤지거래로 발생한 자본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면제함

□ 부가가치세(VAT)

- 반조세회피 조치(anti-avoidance measures)
 - NOK10,000⁴⁷⁾을 초과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NOK10,000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서비스 공급자가 과세관청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는 서비스 공급자의 조세채무 관련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또는 단독으로 부담하게 됨

46) 현재 노르웨이에서 부유세는 자산의 추정 시장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고 있음.

47) 이는 2009년 11월 5일자 최초고시 매매기준율로 평가했을 때 2,081,000원임.

9. 덴마크

가. 덴마크 친환경 자동차세

조세동향 09-02

- 덴마크 조세장관 Kristian Jensen은 지난 2008년 12월 8일 교통체증, 소음, 공기오염, CO₂ 방출량을 줄일 목적으로 자동차세의 근본적인 개혁안을 발표
 - 주 내용은 전반적인 과세수준은 유지하되 차량 구입비는 낮추고 차량 유지비를 높인다는 것
 - 개정안은 녹색차량세(green driving tax)를 실현할 목적으로 2009~2010년 의회에 제출 예정

- 자동차세 개정안(Eco-friendly Car Tax Reform Plan)
 - 자동차등록세 인하
 - 25%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량 가격의 180%까지 인하⁴⁸⁾
 - 녹색차량세(green driving tax) 부과
 - 혼잡성 : 자동차세를 자동차가 사용되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차등 부과
 - CO₂ 및 환경 : 자동차세를 친환경 차량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에 대해 차등 부과
 -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 자동차세를 대체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해 차등 부과
 - 전기차량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저세율 적용

48) 현재 덴마크에서는 자동차가격 중 DKK48,8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5~18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등록세를 부과. 단, 영업용차량의 경우 DKK12,1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20%의 세율을 적용

나. 덴마크 세법개정안 등

조세동향 09-06

1) 세법개정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2월 25일 40억유로 규모의 감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3월에서 4월 중 의회에 제출되어 큰 수정사항 없이 6월에는 채택될 예정이다
- 개인소득세 경감(Individual Tax Relief)
 - 6% 세율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중간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최저세율 구간 및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인하

〈덴마크의 개인소득세율¹⁾〉

과세표준(개인소득과 순자본소득 ²⁾ 의 합계)	세율(%)	
	현행(2009.1)	개정안
DKK279,800 ³⁾ 이하	5.25	4.75
DKK279,800 ³⁾ ~ 335,800	6	폐지(4.75)
DKK335,800 ³⁾ 초과 (DKK44,500 ³⁾ 을 초과하는 연금보험료 ⁴⁾ 포함)	15	13.5

- 주: 1) 덴마크에서 개인 납세자의 소득은 개인소득(personal income), 자본소득(income from capital), 주식소득(income from shares), 지배외국법인 소득(CFC income) 등 4가지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 체계에 따라 과세
- 2) 순이자소득(이자소득-이자지불액), 배당을 제외한 자본소득, 자가 거주주택의 소득추정액 등의 합
- 3) IBFD상 2008년 8월 1일 이후 적용수치
- 4) DKK44,500 이하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담금의 경우 소득에서 공제하고 고용주 부담금의 경우 과세 면제함
- 교회세(church tax) 및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최고 한계세율을 54.6%로 고정
 - 근로공제(employment allowance)를 최대 3,000유로(이전 1,800유로)를 한도로 4.25%에서 7%로 인상

□ 주식소득

- 정부는 주식관련 소득(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다음과 같이 인하할 것을 제안

〈덴마크의 주식관련 소득세율〉

과세표준(EUR)	세율(%)	
	현행	개정안
~ 6,500	28	25
6,500 ~ 14,100	43	40
14,100 ~	45	

-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일치시킴으로써 관련 규정을 간소화
 -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
 - 현행 규정에 의하면 배당의 경우 1년 이상, 자본이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과세면제가 가능
 -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 및 지분율에 관계없이 25%의 세율로 법인세 과세

□ 감세안에 대한 재정조달 방안

- 이자공제율(Interest deduction)을 현 33%에서 25%로 인하하여 세법개정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
 - 하지만 공제율 인하에 따라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13,300유로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
- 또한 법인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을 통해 재원확충
 - 특정 법률비용 및 감사수수료에 대해 손금불산입
 - 톤세율(tonnage tax rate)⁴⁹⁾을 15% 인상

- 외국법인의 취득 관련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보유이자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
- 금융부문에서 급여세(payroll tax) 인상

□ 환경세, 보건 및 부가가치세

- 덴마크는 이미 높은 환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 및 난방에 대해 높은 세율 부과 및 법인 에너지세(energy taxes) 도입 등을 통해 이를 강화
-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 초콜릿 및 설탕제품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

2) 경제위기 대처방안

□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유동성 증대를 위해 2009년 9월 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납부이연을 제안

- 총이연금액은 약 DKK614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이자손실은 DKK14억으로 추정

□ 상세내용

-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납부기한을 2009년 2월부터 약 30일 정도 연장
 - 그 결과 2월 대기업의 원천세 납부기한은 2월 27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소기업 및 중소기업은 3월 10일에서 4월 14일까지로 연장
- 부가가치세
 - 월별 납부대상자⁴⁹⁾ 및 분기별 납부대상자⁵¹⁾의 납부기한을 약 30일 연장
 - 반기별 납부대상자⁵²⁾의 납부기한을 약 6개월 연장

49) 덴마크에서 현재 톤세율은 일반 법인세율과 동일하게 25%를 적용

50) 연간 매출액이 DKK1,500만을 초과

51) 연간 매출액이 DKK100만 이상 DKK1,500만 이하

52) 연간 매출액이 DKK100만 미만

10. 폴란드

가. 개인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승인

조세동향 09-04

- 폴란드 정부는 투자활성화 및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하여 개인 소득세법(the 1991 Personal Income Tax Law) 및 법인세법(the 1992 Corporate Income Tax Law) 개정을 승인
 - 즉시 상각할 수 있는 투자금액(고정자산 구입비용으로 개인용 차량은 제외) 한도를 현 50,000유로에서 100,000유로로 인상
 - 이는 소규모 사업자 및 신설법인에 대해 적용
 - 개인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소규모 납세자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the 2004 VAT Law) 및 회계법(the 1994 Accounting Law)상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와 일치시킴으로써 장부기장을 간소화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연간 순매출액 상한을 현 800,000유로에서 1,200,000유로로 인상
 - 그리고 해당 납세자에 대해 100,000유로를 한도로 연구개발비를 즉시 비용화하거나 법상 상각범위 내에서 감가상각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허용

나. 소득세법 개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09-13

- 폴란드에서는 2009년 6월 8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됨
 -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다음의 특정 범주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면제한다는 것임
 - 고용주의 사회기금으로 조성된 급부(연간 PLN380을 한도로 함)
 - 노동조합이 제공한 급부(연간 PLN638을 한도로 함)
 - 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임

11. 스위스

가. 스위스 정부 부가가치세율 인상 캠페인 착수

조세동향 09-11

- 스위스 정부는 2009년 9월 27일 예정된 국민투표(referendum)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7.6%⁵³)→8%) 법안과 관련 투표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지난 5월 19일 캠페인에 착수함
 -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 plan)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상해보험에서 축적된 결손은 CHF130억에 달하며, 매해 CHF14억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이 폐기되는 경우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⁵⁴)는 상해보험의 운영 관련 결손보전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상해보험을 비롯한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사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증세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난 2009년 1월 당초 5월 17일에 계획되었던 국민투표 일자를 9월 27일로 연기한 바 있음
 -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된 것은 아니나 의회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일자를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연기하는 제안을 거절하였음

53) 스위스는 현행 7.6%의 부가가치세율을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 왔음.

54) 스위스의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은 연금보험(old-age and survivor insurance),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 재해보험(accident insurance), 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스위스 탄소세율 3배 인상

조세동향 09-14

- 스위스에서는 지난 6월 19일 2010년 1월 1일부터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를 3배로 인상(24%p)할 것임을 발표함
- 탄소세율 인상 배경
 - 스위스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는 2007년 의회의 승인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바 있음
 - 탄소세는 천연가스, 난방석유 및 석탄 소비시 부과되며 단,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솔린 및 디젤연료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됨
 - 도입 당시 탄소세율은 CO₂ 배출량 미터톤당 CHF12이었음
 - 그러나 2008년 한 해 동안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된 CO₂가 1990년 수치의 86.5%를 초과할 경우 탄소세율은 2010년부터 세 배로 인상(CO₂ 배출량 미터톤당 CHF36을 적용)될 계획이었음
 - 지난 6월 19일 환경부(Federal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의 보고에 의하면 2008년 스위스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된 CO₂는 1990년도 수치의 88.8%에 달함
 - 따라서 원래 계획된 대로 2010년부터 탄소세율을 CO₂ 배출량 미터톤당 CHF36까지 인상하기로 함
- 탄소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2010년 난방석유 가격 또한 3배(3centimes/liter → 9 centimes/liter)로 인상될 것임이 예상되고 있음

12. 아이슬란드

가. 아이슬란드 의회 증세안 검토 중

조세동향 09-14

- 아이슬란드 의회는 경제위기 이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조치로 지난 6월 19일 예산 지출을 줄이고 증세하는 법안의 검토에 착수함
 - 동 법안으로 남은 2009년 하반기 동안 ISK224억 및 2010년 ISK630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⁵⁵⁾
 -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이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증세안의 주요 내용
 - 월 ISK700,0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8%의 부가세(super tax)를 부과함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ISK800,000인 납세자의 경우 ISK8,00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월 ISK40,000을 초과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현 10%에서 15%로 인상하며, 납부 단위로 1년 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를 적용함
 - 자본이득세를 인상만으로도 2009년 하반기 동안 ISK100억의 추가 세수가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사탕 및 청량음료 등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에 대해 설탕세(sugar tax)를 부과함
 - 경제위기로 실직한 이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고용주 부담 급여보험(wage insurance)을 인상함

- 증세와 더불어 법안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임금삭감,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축소 등을 통해 예산 축소를 계획하고 있음
 - 정부 성명에 의하면 이와 같은 조치는 대부분 긴박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계획된 것임

55) 참고로, 아이슬란드의 회계연도(fiscal year)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나. 아이슬란드 세법개정안

조세동향 09-25

-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18일 직접세 및 간접세 관련 중대한 변화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이는 지난 10월 의회에 제출한 2010 예산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증세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음
- 직접세 분야
 - 개인소득세제 개편
 - 개인소득(투자소득 제외)에 대해 현행 적용되고 있는 22.75%의 단일세율을 폐지하고 3단계 누진세율체계(three-tiered system)를 도입함⁵⁶⁾

〈아이슬란드의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ISK)	세율(%)	
	현행	개정안
~ 200,000	22.75	24.1
200,000 ~ 650,000		27
650,000 ~		33

-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15%→18%)하고, 첫 ISK100,000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함
- 부유세(net worth tax) 도입
 - 순부(net wealth)가 ISK9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1.25% 세율로 부유세를 부과함
- 간접세 분야
 - 부가가치세 세율을 24.5%에서 25%로 0.5%p 인상함

56) 참고로,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소득세 외에 시세(municipal tax)가 부과되는데 이는 2009년 시별로 11.24~13.03% 범위 내에서 부과되고 있음.

- 자동차세, 석유세, 담배세를 인상함
- 탄소세(special carbon fee)를 도입함
- 한시적으로 전기세를 도입하고 이와 아울러 온실 및 추운 지방의 가구에 대해 특별환급(special refunds)을 적용함

13. 오스트리아

가. 오스트리아 2009 세법개정안 및 경기부양책

조세동향 09-07

- 오스트리아 의회(National Council)는 지난 2009년 3월 26일 2009 세법개정안 및 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에 승인
 - 이는 3월 31일 관보에 발표된 후 효력이 발생될 예정

1) 2009 세법개정안(Tax reform 2009)

- 주요 개정내용
 - 개인소득세 과세최저한 금액을 10,000유로에서 11,000유로로 인상
 - 개인소득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오스트리아의 개인소득세율⁵⁷⁾〉

과세표준(EUR)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10,000 ~ 25,000	11,000 ~ 25,000	38.33	36.5
25,000 ~ 51,000	25,000 ~ 60,000	43.59	43.21
51,000 ~	60,000 ~	50	

57) EStG Sec. 33(1)

- 자녀세액공제(tax credit for dependent children)를 월 50.9유로에서 월 58.4유로로 인상
 -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녀보조금에 대해 연간 500유로를 한도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 1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연간 2,300유로를 한도로 자녀양육비 공제
 - 종교 기부금공제를 100유로에서 200유로로 인상
 - 자선 목적의 기부금 공제 도입
 -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면제 폐지
 - 이는 2009년 4월 1일 이후 부여되는 옵션부터 적용
 - 2010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공제를 사업소득금액의 10%에서 13%로 인상
 - 그리고 30,000유로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일부를 고정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
- 세법개정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2) 경기부양책(Economic stimulus measure)

-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 주요 내용
 -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생산 및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적용
 - 사용 첫 해에 30%까지 감가상각 가능하며, 이후에는 정액법(straight-line method)을 적용하여 상각
 - 적용 제외 자산
 - 건물, 임차인의 투자, 저가 자산, 중고자산, 항공기, 자동차(승객운송사업 또는 운전학원 운영을 위해 취득한 경우 제외)

14. 아일랜드

가. 아일랜드 2009 추가예산안

조세동향 09-08

- 재무장관(the Minister of Finance)은 지난 2009년 4월 7일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예산패키지로 '2009 추가예산안(Supplementary Budget 2009)' 을 의회에 제출
 - 아일랜드의 재정적자(budget deficit)는 GDP의 12.7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EU 허용치의 4배에 해당
 - 2009년 동안 재정적자를 GDP의 10.75%로 낮추기 위해 18억유로 규모의 증세정책과 더불어 15억유로 규모의 재정지출 축소안 마련
 - 조세정책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 분야
 - 2009년 5월 1일부터 소득세 추가징수(income levy)⁵⁸⁾ 관련 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하향 조정

〈아일랜드의 소득세 추가징수 세율〉

과세표준(유로)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 100,100	15,028 ~ 75,036	1	2
100,101 ~ 250,120	75,037 ~ 174,980	2	4
250,121 ~	174,981 ~	3	6

58) 소득세 추가징수는 2008년 10월 발표된 2009년 예산에서 도입된 바 있으며, 자본공제 또는 연금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총소득에 대해 부과된다는 측면에서 통상의 소득세와 상이한 제도

- 2009년 5월 1일부터 health levy⁵⁹⁾ 역시 두 배로 인상
 - 75,035유로 이내의 소득자: 2% → 4%
 - 75,037유로 초과 소득자: 2.5% → 5%
-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료(PRSI) 한도 인상(2,000유로→75,036유로)
-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DIRT)를 2009년 4월 7일 자정부터 2%p 인상(23%→25%)
 - 생명보험증권 및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는 26%에서 28%로 인상하며, 생명보험증권에 대해서는 1%의 추가징수 도입
- 주택담보이자공제(Mortgage Interest Relief)를 주된 주택에 대해 첫 7년으로 제한
- 거주 임대주택 관련 이자공제 금액 인하(100%→70%)

□ 자본관련 과세 분야

- 자본이득세(CGT) 및 자본취득세(CAT) 세율 인상(22%→25%)
 - 이는 2009년 4월 8일 이후 매각분 또는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또한 2009년 4월 8일부터 상속·증여세 과세최저한을 다음과 같이 20% 인하

〈아일랜드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최저한〉

상속인(또는 수증인)	개정 전(유로)	개정 후(유로)
Group A(자녀)	542,544	434,000
Group B(친척)	54,254	43,400
Group C(기타)	27,127	21,700

- 또한 2010년 및 2011년에 각각 17.5억유로, 15억유로의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다음의 조세정책을 계획
 - 불필요한 공제 폐지 및 비과세 소득의 범위 검토 등을 통한 세원 확대
 - 탄소세(carbon tax) 및 자산세(property taxes) 도입
 - 자녀보조금(child benefit payment)에 대한 과세처리 변경

59) 소득세처럼 월급에서 공제되는 일종의 소득세로서 아일랜드의 공공의료 서비스(health service)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

15. 헝가리

가. 헝가리 세법개정(amendments to tax laws)

조세동향 09-11

- 헝가리 의회는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긴축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5월 11일 세법개정안을 승인함
 - 이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부가가치세 분야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standard rate)을 20%에서 25%로 인상함
 - 한편, 기본식료품 및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18%의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을 도입하고, 5%의 경감세율(reduced rate)은 그대로 유지함
 - 참고로, 경감세율의 경우 도서, 신문, 잡지, 특정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에서 18%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의 확대 폭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함
 - 현재 헝가리의 개인소득세율은 과세소득 중 첫 HUF170만에 대해서는 18%를,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6%를 적용하고 있음
 - 지난해 8월 27일 헝가리 수상은 감세패키지를 통해 18%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2009년 HUF200만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한 바 있으나, 이를 HUF 190만으로 조정함
 -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⁶⁰⁾ 세율을 인하함
 - 과세소득 중 법정최소임금의 두 배(현재 HUF138,000)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60) 24%의 연금보험료(pension insurance contribution)와 5%의 건강보험료(health insurance contribution)로 구성되어 있음.

는 현행 29%의 세율을 26%로 인하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9%의 세율을 유지함

-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세율을 인하함
 - 과세소득 중 법정최소임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을 유지함

□ 법인세 분야

- 특별상각(extraordinary depreciation)
 - 현재 법인세법상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만 공제 가능함
 - 세법개정에 의하면, 미사용공제액을 다음 4개 과세연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외화환산(foreign currency)
 - 현재 장기 외화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그 외화환산손익의 인식을 실현 시점까지 연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단, 일부 항목에 한해 인식을 이연할 수는 없으며, 이는 납세자의 관련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세법개정에 의하면, 장기 외화지분 관련 미실현 자본손익에 대해서만 그 인식을 이연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 기타 분야

- 연료, 담배 및 알코올에 대한 소비세율을 평균 3%에서 7%p만큼 인상함
- 전기엔진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과세를 면제함

16. 스페인

가. 스페인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

조세동향 09-20

- 지난 2009년 9월 26일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이 정부의 승인을 얻음
 - 이는 급증하는 재정결손(budget deficit)⁶¹⁾을 축소하기 위한 긴축예산으로 세법 개정 관련 110억유로 규모의 증세가 기대되고 있음
 -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 개인소득세 분야
 - 저축소득에 대해 누진과세 체계(progressive taxation)를 도입함
 - 현재 저축소득은 18%의 단일세율(flat rate)로 과세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과세소득 중 첫 6,000유로에 대해서는 19%,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에 적용되던 400유로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공제금액은 관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평균세율(average tax rate)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인세 분야
 - 소기업(small enterprises)에 대한 법인세율을 일시적으로 5%p만큼 인하함
 - 현재 법인세 일반세율은 30%로 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중 첫 120,202.41유로에 대해서는 25%,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매출액이 500만유로 미만이고 종업원 수가 25명 미만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대해 25%의 세율을 20%로 인하함

61) 2010 예산안에 의하면 증세에도 불구하고 GDP 5.4%의 재정결손이 예상되고 있음. EU의 재정결손 요구 한도는 GDP 3%로 EU에서는 스페인이 2012년까지 그 재정결손 수준을 EU 한도만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분야
 - 2010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general tax rate)을 16%에서 18%로 인상함
 - 경감세율(reduced tax rate) 역시 7%에서 8%로 인상하되, 최저세율(lowest tax rate)은 4%로 유지함⁶²⁾

- 한편, 야당은 정부의 이와 같은 증세안에 대해 심각한 재정결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카탈로니아당(Catalan Party)은 증세안이 일자리 창출과 양립할 수 없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정당(Popular Party) 역시 증세안으로 더 많은 실업이 양산되어 결국 재정결손이 증가될 것이라는 이유로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음
 -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 조치는 저소득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좌파(left-wing parties) 의원 역시 예산안에 고소득자를 위한 증세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음

17. 스웨덴

가. 스웨덴 부동산 세제 개정

조세동향 09-22

-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14일 부동산 세제(real estate taxation)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부동산세(real estate tax)
 - 거주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공공요금⁶³⁾의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함

62) 참고로, 경감세율의 경우 음식(food), 거주주택(dwelling), 교통(transport), 여행(tourism) 등에 적용되며, 최저세율은 기본 생필품(basic necessities)에 적용됨.

63) 2008년 1월 1일부터 거주주택에 대한 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요금(kommunal fastighetsavgift)으로 변경된 바 있음.

-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및 평가금액이 SEK50,000 이하인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공공요금을 부과함

□ 자본이득세(tax on capital gains)

○ 현행규정

-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1) 양도주택이 납세자의 거주주택에 해당하고, (2) 자본이득이 SEK50,000을 초과하고, (3) 납세자가 신규거주주택을 구입한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함
- 과세이연금액 한도는 SEK160만으로 연간 0.5%의 이자가 적용됨
- 또한 추후 과세시점에는 과세이연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과세이연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함

○ 개정안

- 최대이연금액을 현 SEK160만에서 SEK145만으로 축소함
- 과세이연 기간이 1년 이내인 과세이연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10%의 수수료를 폐지함

18. 기타 (유럽/OECD)

가. 유럽 부가가치세 인상 국면

조세동향 09-17

- 유럽에서는 급증하는 정부부채 관련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임
- 국가별 부가가치세율 인상 사례
 - 발트해 국가의 사례를 보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는 광범위한 조세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세 국가 모두 부가가치세에 18%의 단일세율제도(flat rate tax system)를 도입한 바 있으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부채 압박의 증가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는 재정결손을 줄이고자 2009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p 인상함(18%→20%)

- 라트비아는 200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3%p 인상 적용함(18% →21%)
- 리투아니아는 2008년 말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p 인상(18%→19%)한 데 이어 2009년 9월 1일부터는 이를 2%p 추가 인상할 예정임(19%→21%)
- 아일랜드의 경우 2008년 말 부가가치세율을 0.5%p 인상함(21%→21.5%)
- 헝가리는 2009년 7월 1일 부가가치세율을 5%p 인상함(20%→25%)
- 또한 영국의 경우 치솟는 정부부채⁶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2년 내에 부가가치세율을 20%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음
- 영국은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율을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17.5%→15%)한 바 있음

□ 참고로, 2009년 7월 1일 현재 EU 가입 27개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⁶⁵⁾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국가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오스트리아	20	독일	19	네덜란드	19
벨기에	21	그리스	19	폴란드	22
불가리아	20	헝가리	25	포르투갈	20
키프로스	15	아일랜드	21.5	루마니아	19
체코	49	이탈리아	20	슬로바키아	19
덴마크	25	라트비아	21	슬로베니아	20
에스토니아	20	리투아니아	19 ¹⁾	스페인	16
핀란드	22	룩셈부르크	15	스웨덴	25
프랑스	19.6	몰타	18	영국	15

주: 1) 2009년 9월 1일부터는 21%를 적용함
 자료: www.ibfd.org

64) 영국에서 국가부채는 앞으로 몇 년 안에 £120billion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65) 제6차 EU Directive에 의하면, EU국가들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standard rate)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5% 이상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율(reduced rate)은 5% 이상이어야 함.

나. UBS에 관한 스위스와 미국 간에 약정 체결

- 미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은 역외탈세에 대한 미국 국세청 세무조사의 일부로 행해진 「포괄적 자료제출명령장(John Doe Summons)」의 발급에 관해 합의에 도달함
 - 2008년 7월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연방소득세의 탈세를 위해 스위스 은행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인 납세자에 관해 UBS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 국세청이 제출한 포괄적 자료제출명령장의 발급에 대해 승인함
 - 미국 국세청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 의한 탈세행위 가능성에 관해 정보를 얻기 위해 포괄적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 재무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는 당해 역년 동안 어느 때고 계좌잔액이 \$10,000을 초과하는 외국의 금융계좌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스위스 은행계좌를 통해 이러한 신고의무를 회피해 옴
 - 미국 국세청은 2008년 3월, 리히텐슈타인에 있는 은행계좌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개시함
 - 이러한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리히텐슈타인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하기 위해 OECD 포럼에서 다루어진 국가간 합의에 따라 국제적 공조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임
 -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은행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 형법규정을 들어 그 동안 미국 정부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해 옴
- 미국과 스위스 연방 간의 합의내용은 스위스 연방의 언론보도 자료와 미국 국세청과 법무부의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공표됨
 - 합의내용은 “UBS에 관한 국세청의 정보제출요청에 대한 미국과 스위스 연방 간의 약정서”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약정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은 UBS의 미국인 고객 약 4,450명의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함
 - 행정적 지원에 대한 요청은 현행 「1996 미국-스위스 조세협약」 제26조에 따라 이루어짐

- 약정에 따르면 UBS는 스위스 연방국세청의 정보제출 요청에 따르기로 동의함
- 미국 법무부의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조세조약상의 요청을 받자마자 스위스 정부는 UBS에 직접 미국 국세청의 조약상 요청에 포함돼야 할 계좌 소유주를 통지해야 함
- 이와 함께 양측은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미국-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2009년 6월 18일)”에 서명하고, 즉시 비준하기로 동의함
 - 개정된 조세조약은 정보교환에 관한 제26조를 수정함으로써 정보교환에 관해 OECD 모델 조세조약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임
- UBS와 체결한 별도의 합의 약정서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은 포괄적 자료 제출 명령장을 철회하고, 양측 모두 소송을 철회하기로 함
 - 한편 미국 국세청의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 23일 이전에 미국 납세자가 은닉된 역외 계좌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벌금이 감경됨

다. EU 탄소세 도입 논의

조세동향 09-21

- EU 경제재무장관 정상회담(EU Council of Economic and Finance Ministers)에서는 지난 2009년 10월 2일 신규 세원 창출 및 화석연료 소비 감소를 위해 EU 차원의 탄소세 도입을 논의함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0년 교통수단 및 가정용 난방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 탄소세의 도입을 제안할 예정임
 - 탄소세는 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과세될 예정이며, 탄소세의 도입으로 현재 EU 배출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적용받지 않는 오염원에 대해서도 과세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또한 탄소세의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는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세 지원 및 빈곤국가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 climate change agreement) 체결비용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임

- 탄소세 도입 논의는 CO₂에 대한 과세를 위한 첫 번째 시도로 탄소세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27개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탄소세에 대한 EU 회원국의 지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슬로베니아의 경우 이미 탄소세를 도입한 바 있음
 - 또한 프랑스의 경우 지난 9월 30일 발간한 2010예산안을 통해 EU 배출거래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량의 감소를 목적으로 탄소세의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아일랜드 정부 역시 12월에 발표될 예정인 2010예산안에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증세보다는 재정지출 축소에 초점을 둘 것이나 정부의 선결과제인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탄소세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벨기에 재무부 장관 Reynders는 고용 활성화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탄소세의 도입은 노동에서 다른 분야로 과세전환이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라고 입장을 표명함
 - 한편, 영국은 EU 차원의 탄소세 도입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로, 몇몇 회원국의 경우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회의 결과 체결 예정인 국제기후변화 협약의 비용 충당을 위해 환경세로 신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음

라.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8 출간

조세동향 09-24

- OECD는 지난 11월 24일 Revenue Statistics 1965-2008을 출간하였음
 -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을 보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7년의 경우 유럽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의 2개 국가가 45%를 초과하는 반면, 일본, 한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미국의 7개 국가는 30% 미만임
 - 2007년 OECD 전체의 조세부담률은 35.8%로서 1975~2007 기간중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36%)을 보였던 2000년도에 비해 0.2% 낮은 수준임
 - OECD 30개 국가 중 2008년 잠정치를 발표한 국가는 26개 국가임

- 잠정치를 발표한 국가 중 17개 국가는 2007년에 비해 2008년도에 조세부담률이 감소하였고, 9개 국가는 증가하였음
- 2%p 이상 감소한 국가는 아이슬란드(4.9%p), 스페인(4.2%p), 아일랜드(2.5%p)임
- 조세부담률 증가폭이 큰 국가는 멕시코(3.1%p), 룩셈부르크(1.7%p)임
- 2006~2007년 기간에 총조세에서 소득세(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3.2%로 증가하였음
- 스페인은 1.2%p가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노르웨이는 1%p가 하락하여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임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총조세/GDP)〉

(단위: %)

	2000	2006	2007	2008 (잠정치)
캐나다	35.6	33.5	33.3	32.2
멕시코	16.9	18.3	18.0	21.2
미국	29.9	28.2	28.3	26.9
호주	31.1	30.6	30.8	n.a.
일본	27.0	28.0	28.3	n.a.
한국	22.6	25.0	26.5	26.6
뉴질랜드	33.6	36.6	35.7	34.5
오스트리아	43.2	41.8	42.3	42.9
벨기에	44.9	44.4	43.9	44.3
체코	35.3	37.1	37.4	36.6
덴마크	49.4	49.6	48.7	48.3
핀란드	47.2	43.5	43.0	42.8
프랑스	44.4	44.0	43.5	43.1
독일	37.2	35.6	36.2	36.4
그리스	34.0	31.2	32.0	31.3
헝가리	38.0	37.1	39.5	40.1
아이슬란드	37.2	41.5	40.9	36.0
아일랜드	31.3	31.7	30.8	28.3
이탈리아	42.3	42.3	43.5	43.2
룩셈부르크	39.1	35.8	36.5	38.3
네덜란드	39.7	38.9	37.5	n.a.
노르웨이	42.6	44.0	43.6	42.1
폴란드	32.8	34.0	34.9	n.a.
포르투갈	34.1	35.5	36.4	36.5
슬로바키아	34.1	29.4	29.4	29.3
스페인	34.2	36.7	37.2	33.0
스웨덴	51.8	49.0	48.3	47.1
스위스	30.0	29.3	28.9	29.4
터키	24.2	24.5	23.7	23.5
영국	36.4	36.6	36.1	35.7
OECD 평균	36.0	35.8	35.8	n.a.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8*, 2009.



아 시 아

1. 일본

가. 일본의 2008 세제개편

조세동향 09-01

-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08년 12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기회복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주택·토지세제, 법인 관련 세제, 상속세제, 금융·증권세제, 국제과세, 자동차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세제개정안 발표
- 주택·토지세제
 - 주택세제
 - 주택용자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최대공제가능액을 500만엔(장기우량주택의 경우에는 600만엔)으로 인상
 - 장기 우량주택의 신축 등을 하는 경우나 에너지절약 및 장벽제거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제도 신설
 - 토지세제
 - 2009년과 2010년에 취득하는 토지를 5년 초과하여 소유하고 양도할 때의 양도이익에 대해 1,000만엔을 공제하는 장기양도소득 특별공제제도 신설
 - 사업자가 2009년과 2010년에 토지를 선행취득하고, 그후 10년 내에 다른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 그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신설
 - 토지의 매매 등과 관련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감세율을 2년간 더 적용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 법인 관련 세제

- 에너지수급 구조개혁 추진 설비나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 2년간 즉시상각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투자감세 조치 도입
- 중소기업 등의 경감세율을 현행 22%에서 18%로 2009년부터 2년간 인하

□ 상속세제

-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 도입
 - 경영승계상속인이 비상장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그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해 경영하는 경우 그 경영승계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 중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한 의결권 주식 등(상속 개시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의결권 주식 등을 포함하고 그 회사의 발행제의결권주식 총수의 3분의 2까지)과 관련되는 과세 가격의 80%에 대응하는 상속세의 납세를 유예

□ 증권·금융세제

-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 및 양도이익에 대해 현행의 7% 경감세율을 3년간 연장
-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해서 개인기여(매칭기여)를 도입함과 동시에 기여금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고 기여한도액을 인상
 - 기업형연금의 경우 다른 기업연금이 없는 경우 현재 월 46,000엔에서 51,000엔, 다른 기업연금이 있는 경우 현재 월 23,000엔에서 25,500엔으로 인상
 - 개인형연금의 경우 현재 월 18,000엔에서 23,000엔으로 인상
- 일반생명보험료 공제와 별도로 4만엔의 간호의료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 국제과세

- 일본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획득하는 이익이 국내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 대신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모회사가 익금불산입하는 제도 도입
 -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배당 등의 지불 의무가 확정되는 날 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외국법인을 말함

- 2009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 등에 적용

□ 자동차 과세

- 일정한 배기가스 성능·연비 성능 등을 갖춘 자동차와 관련되는 자동차 중량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 2009.4.1.~2012.4.30. 기간에 받는 신규·계속검사(해당 기간 내에 최초로 받는 검사에 한정)시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중량세에 대하여 배출가스기준 및 연비성능 등에 따라 과세면제, 75% 세율경감, 50% 세율경감

나. 일본 정액급부금 지급

조세동향 09-05

□ 「생활대책('08.10.30.)」을 통해 주민의 생활지원 및 지역경제대책으로 제시되었던 「정액급부금」이 지자체를 통해 3월 5일부터 지급 개시

- 급부대상자: 2009년 2월 1일 현재 ①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 또는 ②외국인등록원표에 등록되어 있는 자(불법체재자 및 단기체재자 제외)
- 신청 및 수급자: 급부대상자가 속하는 세대의 세대주
- 급부액: 1인당 12,000엔(65세 이상 및 18세 이하인 경우 20,000엔)
- 총사업비: 2조 395억엔
- 신청 및 급부방법:
 - ① 우편신청방식: 입금계좌를 적은 신청서를 본인확인서와 함께 시정촌에 송부하여 송금에 의해 수급
 - ② 창구신청방식: 입금계좌를 적은 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하여 송금에 의해 수급
 - ③ 창구현금수령방식: 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하고 현금으로 수급
- ※ ③의 방식은 ①, ②의 방식이 어려운 경우
- 급부 개시일: 시정촌에서 결정, 신청기한은 신청접수개시일로부터 6개월
- 10~20% 할증액을 더한 프리미엄상품권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음

다. 추가 경기대책으로 고속도로 요금인하 실시

조세동향 09-06

- 2008년 정부의 추가 경기대책 중 하나였던 고속도로 요금인하가 3월 28일부터 전국에서 실시됨
 - 대상차량: 자동요금수수 시스템(ETC)을 탑재한 보통차
 - 토·일요일, 국경일은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1,000엔으로 통행
 - 대도시권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적용
 - 도쿄만 아쿠아 라인과 혼슈 시코쿠 도로는 20일부터 선행 실시
 - 적용기간: 2년

라. 일본 「4·10 경제위기대책」

조세동향 09-08

- 정부는 4월 10일 「경제위기대책」을 발표하였고 4월 2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세이프티 넷(safety net)의 구축 등 긴급고용대책의 확충·강화를 실시하고, 금융중개기능의 원활화 및 기업의 자금유통대책 등 금융 측면의 대책을 강구하여 경제의 분열 방지
 -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등을 근거로 저탄소 혁명, 건강장수·육아, 저력 발휘·21세기형 인프라 정비 등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시책 집행
 - 국민의 '안심과 활력'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정책 총동원
 - 고령자의 자산을 활용한 주택 취득의 지원, 중소기업 활동의 지원,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의 확보를 위해 관련 세제의 정비 실시
 -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여세 경감
 - 거주용 가옥의 취득에 충당하기 위해 직계 존속으로부터 금전의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면제

- 이는 생전증여를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자산을 활용한 수요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 중소기업의 접대비(교제비) 한도액 인상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 중 자본금 1억엔 이하인 법인의 접대비정액공제 한도액을 4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인상
- 연구개발 세제의 확충
 - 시험연구비의 총액기준 세액공제제도 한도액을 2009년과 2010년도 기간에 한해 법인세액의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인상
 - 2009년과 2010년도에 생기는 세액공제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2011년과 2012년도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이월하는 것을 허용

마. 일본 영토적 과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 도입

조세동향 09-09

- 일본은 세법개정을 통해 2009년 4월 1일부터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과세 면제하는 ‘영토적 과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를 채택함으로써 일본 다국적기업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영토적 과세체계’란 일본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획득하는 이익이 국내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 대신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모회사가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말함
 -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국제조세 분야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일본이 ‘영토적 과세체계’를 도입하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모두 높은 법인세율과 ‘전세계 기준’에 의한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국가였음
 - 그러나 현재는 미국이 유일하게 OECD 국가 중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서 ‘전세계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 미국 외의 ‘전세계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모두 세율이 30% 미만임
 - 아래 표는 Fortune Global 50개 회사의 본사 주재 국가 및 각 국가의 법정세율 및 과세방식에 대해 보여주고 있음

〈본사 주재국별 Fortune Global 50개 회사〉

본사 주재국	회사 수	회사 수 비중(%)	2009년 법정세율(%) ¹⁾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미국	17	34	35	전세계 기준(Worldwide with credit)
프랑스	6	12	33.33	영토적 과세체계
독일	5	10	15	영토적 과세체계
영국	4	8	28	영토적 과세체계로 전환중 ²⁾
네덜란드	2	4	25.5	영토적 과세체계
일본	4	8	30	영토적 과세체계
중국	3	6	25	전세계 기준
벨기에	2	4	33	영토적 과세체계
이탈리아	2	4	27.5	영토적 과세체계
스위스	1	2	8.5	영토적 과세체계
한국	1	2	22	전세계 기준
룩셈부르크	1	2	21	영토적 과세체계
멕시코	1	2	28	전세계 기준
러시아	1	2	20	전세계 기준
합계/평균	50	100		-

주: 1) 부가세 및 지방세 등은 포함하지 않은 법인세율임

2) 4월 22일 발표한 예산안에 영토적 과세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Fortune Global 500, calculations by Ernst & Young LLP, IBFD Global Tax surveys

바. 일본 R&D 세액공제 인상 승인

조세동향 09-17

- 일본 의회는 지난 2009년 4월에 발표한 경기부양 정책에 포함되었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한도 인상에 관한 법안을 2009년 6월 19일 승인하였음
- 일본은 현재 다음 두 가지 형태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규모	R&D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A) ¹⁾	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B) ¹⁾
대기업	R&D 지출 × (8~10%)	① (R&D 지출 - 과거 3년 R&D 지출 평균) × 5% ³⁾ 또는
중소기업 ²⁾	R&D 지출 × 12%	② (R&D 지출-평균매출×10%)×(R&D 비율 ⁴⁾ - 10%)×20%

- 주: 1) (A)의 적용기간은 2009. 4. 1.이후부터 2011. 4. 1.이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 (B)의 적용기간은 2008. 4. 1.이후부터 2010. 4. 1. 이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임
 2) 중소기업은 자본금 1억 미만인 기업임
 3) 당해 연도 R&D 지출이 직전연도 2년 각각의 R&D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
 4) R&D 비율 = 당기 R&D 지출/최근의 4년 연평균 매출

- 세액공제 (A)는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하였으나 새로운 법안에 의해 법인세의 30%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였음
- 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B)의 한도액은 법인세액의 10%이므로 2010. 4. 1. 이전 과세연도까지는 R&D 세액공제의 최고 한도가 법인세의 30%에서 40%로 증가된 것임

2. 중국

가. 중국 위안화의 세계화 추진 및 무역거래 결제 시행

조세동향 09-15

- 중국정부는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위안화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세 환급 정책을 허용함
 - 2009년 7월 2일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상무부가 ‘대외무역 위안화 결제 시범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2009년 7월 3일 위안화 결제 허용안이 발효됨
 - 기존에는 달러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수출세 환급 정책이 적용되었음
 - 단, 현재는 상하이 및 광둥성 4개 도시(선전, 광저우, 동관, 중하이)에 소재한 기

업들이 홍콩과 마카오의 기업들에 수출하는 경우에 한정되나, 조만간 광시자치구와 운남성에 소재한 기업들이 위안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아세안 10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허용할 예정임

- 위안화의 무역거래 결제 허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위안화로 결제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세금공제가 적용될 예정임(세부사항 미정)
 - 수출업체들이 외화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송금 및 환전비용의 절감으로 약 3~5%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임
 - 기업들의 달러 의존도 감소로 환차손 위험이 감소함
 - 위안화 사용범위를 확장해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점차 획득함

- 위안화의 무역거래 결제 허용에 대해 홍콩 기업, 협회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 홍콩-중국 간 위안화 무역거래 결제사업의 잠재성은 크나 과도기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을 마친 후에는 위안화 무역거래 결제가 전 중국 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함

나. 중국 일부 업종의 광고선전비 공제한도 확대

조세동향 09-18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일부 업종의 광고선전비 공제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업종 광고선전비 세전공제 정책》(재세 [2009] 72호) 통지를 지난 7월 31일 발표함
 - 일반적인 경우, 기업의 광고선전비는 당년도 매출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나(국무원령 제 512호 44조), 이번 조치로 화장품 제조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당년도 매출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짐
 - 본 개정 내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동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화장품 제조업, 의약 제조업, 음료 제조업(주류 제외)의 광고선전비 지출에 대해 당년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전 공제를 허가함
 - 단, 30% 초과분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 특히경영모델(프랜차이즈)을 채택한 음료제조 기업의 경우, 본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부담한 가맹점의 광고선전비를 해당 가맹점 매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함
 - 음료기업 특히경영모델이란, 음료 브랜드 소유측이나 관리측(이하 가맹본사)이 가맹자에게 지정된 지역에서 그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키며,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브랜드 제품의 광고선전비를 통일적으로 가맹본사에 부담시키는 영업모델임
 - 가맹자는 당년도 매출액 수치 자료 및 광고선전비 지출 증빙자료 등을 보관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함

다. 중국 연구개발기구 설비 구매 세수정책(2009. 10. 10)

조세동향 09-23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등이 과학 연구 및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구 구매설비 세수정책》(재세 [2009] 115호)을 발표함
 - 《과학기술개발용품 수입세수 면제 잠행규정》(재정부·세관총국·국가세무총국령 44호)에 따르면 외국 연구개발기구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용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면제되는바, 동 통지에서는 이러한 조세특례의 적용요건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또한 2008년 말로 종료됐던 중국산 연구개발설비 구입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부활시킴
 - 본 통지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됨

3. 대만

가. 대만의 경제위기 대응 조세정책

조세동향 09-02

1) 결손금 공제기한 연장⁶⁶⁾

- 2009년 1월 6일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 기한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음
 - 경제위기 때문에 손실이 난 6만여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기로 함
 - 세법개정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특히 국제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곤란을 겪고 있는 DRAM 산업 및 평판(Flat-panel) 제조업체 등이 혜택수혜

2) 세금납부기한 연장

- 대만 재정부가 2009년 1월 2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실업 상태에 있는 개인과 재무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3달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음
 - 다만, 납부기한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인의 경우 순영업수익(net operating revenue)이 i)작년 4/4분기에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ii)이번 달로부터 1년 전의 4월까지 30% 이상 감소하였다면 최대 세 달 동안 세금의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음
 - 대만 국내기업 중 1/3 이상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작년 하반기 동안 200,000개 이상 기업의 이익이 30% 이상 감소했음
 - 세금의 납부를 연기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연도 말 이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

66) <http://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09/01/07/2003433123>

- 개인의 경우 저소득자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소득세의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음
 - 법인과 동일하게 이번 연도 말 이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은 다음 달에 공표 예정
 - 사실상 빈곤층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이연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2009년 1월 17일 재무부장관의 발언 내용에는 납부기한 연장 이외에도 분납에 관한 내용 역시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발표에는 분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3) 상품권 지급

- 대만 정부가 소비 진작 목적으로 2009년 1월 18일 모든 대만 국민에게 NT\$3,600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음
 - 상품권 지급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간소비 촉진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기로 함
 - 전국에 있는 14,202개의 수금센터(collection center)에서 상품권 지급 대상자의 약 91.29%에 해당하는 2,100만명 이상의 개인이 이날 상품권을 수령
 - 대만 정부에선 약 23,260,000명으로 상품권 수혜자 추산
 - 1월 18일에 상품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정 연휴가 끝난 후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20세 이상의 대만인의 경우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상품권 통지서를 지참하고, 지정 장소에 방문하면 상품권 수령 가능
 - 미성년자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상품권을 대신하여 수령 가능하며,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호적카드(household registration card) 만으로도 충분
 - 대만인과 혼인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외국인거주

- 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 카운터에서 상품권을 수령해야 함
- 직접 상품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효한 ID와 호적을 갖고 있는 다른 대만인을 통해 상품권을 대리수령하는 것 또한 가능
 - 이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 후 자신의 신분증 또는 외국인거주자등록증을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하는 대만인에게 전달해야 함
- 2009년 9월 30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초과하면 무효가 됨
 - 액면가액 NT\$500 상당의 상품권 6장과 액면가액 NT\$200 상당의 상품권 3장,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해 타인이 사용하더라도 제재 불가
 - 구입품목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필한 상가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면제되는 노점상, 의료·복지·교육기관 등에서는 사용 불가
- 정부가 상품권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해 국회에 특별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 12월 26일 국회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음
 - 2008년 12월 5일에 <상품권 지급에 관한 특별법(振興經濟消費券發放特別條例)>이 통과, 2008년 12월 26일에는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

나. 대만 소득세율 인하

조세동향 09-06

- 2009년 3월 5일, 대만 내각(Cabinet)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년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안을 승인함
 -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함
 - 세 개의 가장 낮은 소득구간의 소득세율을 각각 6%에서 5%로, 13%에서 12%로 그리고 21%에서 20%로 인하함

〈대만의 소득세 한계세율〉

소득구간(NT\$)	세율(현행)	세율(계획)
0 - 410,000	6	5
410,001 - 1,090,000	13	12
1,090,001 - 2,180,000	21	20
2,180,001 - 4,090,000	30	30
4,090,001 이상	40	40

□ 상기 법안은 입법원(Legislative Yuan)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다. 대만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국회 승인

조세동향 09-10

-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1일 대만 국회가 내각이 제출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안을 승인함
 - 동 법안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0%로 5%p 인하됨
 - 또한 하위 세 개 소득세 과세구간의 한계세율이 1%p씩 인하되고, 최저 소득층의 소득세 과세구간 기준금액이 인상됨(NT\$410,000→NT\$500,000)
 - 그러나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함
 - 대만 정부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초기에 약 NT\$809억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감세조치가 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며,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대만에서는 2009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산업고도화촉진조례(Statute for Industrial Upgrading)⁶⁷⁾」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계속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정치적 내분과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어 옴

67) 1991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9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임.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법안으로 신흥·주요·전략산업, 연구개발, 민간참여 공공건설, 낙후지역 투자, 물류센터 설립, 지역운영본부 설립 등에 관한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하여서는 陳水扁 총통 시절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이 내각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무산됨
 - 2007년 3월 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최종적인 입안에는 실패함
 - 2008년 1월 20일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홍콩과 동일하게 17.5%로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최종적인 입안에는 실패함

〈대만의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구분	세율체계 개정내용			
법인세	과세소득 (NT\$)	한계세율(%)		비 고
		개정 전	개정 후	
	~ 50,000	0	0	
	50,000 ~ 100,000	15	15	과세소득이 NT \$50,000 이하이면 법인세가 면제 과세소득이 NT \$50,000 ~ NT\$ 100,000이면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산출 법인세 산출세액 ¹⁾ =Min(①, ②) ① 과세소득 × 한계세율(즉, 15%) ② (과세소득 - NT\$5만)×50%
	100,000 ~	25	20	과세소득이 NT\$ 100,000을 초과하면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도출 법인세 산출세액= (과세소득 - NT\$100,000)×한계세율+NT\$15,000 ²⁾
소득세	개정 전		개정 후	
	소득구간(NT\$)	한계세율(%)	소득구간(NT\$)	한계세율(%)
	~410,000	6	~500,000	5
	410,001~1,090,000	13	500,001~1,090,000	12
	1,090,001~2,180,000	21	1,090,001~2,180,000	20
	2,180,001~4,090,000	30	2,180,001~4,090,000	30
	4,090,001	40	4,090,001	40

주: 1) 즉, 과세소득이 NT\$71,428 이하일 때는 “(과세소득-50,000)×50%” 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되고, 과세소득이 NT\$71,428을 초과하면 “과세소득×15%” 가 법인세 산출세액이 됨
2) Min[100,000×15%, (100,000-50,000)×50%]

- 그러나 2008년 5월 馬英九 총통의 정권교체 이후,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내용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함
 - 2008년 12월 29일 열린 조세개혁위원회(tax reform commission)⁶⁸⁾ 제7차 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대신 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일부 조세특례 규정을 계속하여 유지하기로 결론내림
 - 조세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여 대만 내각이 2009년 3월 5일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가 이를 5월 1일 최종 승인함

라. 대만 법인세 및 조세징수법 개정

조세동향 09-12

- 대만 국회(입법원)가 지난 5월 1일 법인세 및 조세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이번 세제개편의 주요 목적은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조세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 법인세법의 개정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3단계 법인세율 구조(0%, 15%, 25%)를 20%의 단일세율 구조로 개편하는 대신 법인세 면제소득 구간을 NT\$50,000에서 NT\$12,000으로 인하함
 - 둘째, 직전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신고 의무를 면제함
 - 세법개정 이전에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간예납신고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음
 - 셋째, 회사 형태가 아닌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단계에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대신 소유주 또는 파트너가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 이전에는 사업체 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 소유주 또는 파트너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함

68) 2008년 5월 정권교체 이후 馬英九 총통이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조세분야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정부, 재계, 시민단체, 학계에서 선출된 20명 이상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총통이 의장직을 맡고 있고, 2008년 6월말부터 매월 1차례 회의를 갖고 있음.

- 조세징수법의 개정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에 기초한 과세” 규정을 신설함
 - 둘째, 재무부가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때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토록 함
 - 셋째, 사업체의 책임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 실제 책임자가 다른 경우 실제 책임자가 모든 납세의무 및 패널티를 부담토록 명시함

- 이와 동시에 대만 국회는 청주 및 수입 증류주에 대한 담배 및 주세의 세율을 인하함
 - 청주 및 수입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NT\$ 185에서 1리터·알코올 1도당 NT\$2.5로 인하함
 - 세법개정 이전에는 청주와 고가의 수입산 증류주에 대하여 리터당 NT\$ 185의 세금이 부과됨
 - 그 결과 청주의 가격이 한 병당 NT\$24에서 NT\$180으로 급등하고, 청주 밀주가 성행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됨

마. 대만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식 통일

조세동향 09-13

- 대만 국회(입법원)가 금융상품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단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승인함
 - 대만 재정부는 그동안 금융상품의 투자소득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서로 다른 과세방식을 적용해 왔으며, 세법이 아닌 기타의 법률에도 금융상품 과세에 관한 내용이 산재되어 있어 금융상품 과세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달았음
 -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계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금융상품의 투자소득에 대한 대만의 현행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법인의 경우 금융상품의 투자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5%의 법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과세방식이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짐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식(기준)〉

구분	과세방식
단기기업어음 (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기업어음의 이자는 20%의 완납적 원천징수를 통하여 과세가 종결됨
증권화된 상품 (Securitized Commod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 및 증권화된 부동산 상품(주로 부동산투자신탁)의 이자소득은 6%의 완납적 원천징수를 통하여 과세가 종결됨 ▪ 이와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의 운영 및 과세는 세법이 아닌 자산유동화법의 적용을 받음
채권재매입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재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함
구조화된 상품 (Structured Commod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환율·주가 또는 주가지수와 연동된 구조화된 상품(파생상품)과 관련된 거래에서 얻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함 -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으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함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의 과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인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10%의 완납적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가 종결됨
 - 다만, 투자형 보험증권(investment-type insurance policies)과 채권거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투자형 보험증권은 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간에 과세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채권거래는 2008년 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미 1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⁶⁹⁾

69)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니라 소득세 종합과세 시스템을 통

바. 대만 해외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과세 실시(2009. 9. 18)

조세동향 09-19

- 대만 재정부가 9월 18일 개인의 해외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과세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함
 - 개인의 해외소득에 대한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과세는 2006년 1월 1일 처음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속하여 시행이 연기되어 오다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만 국경 내에 거주하고(대만 내 주소는 없지만, 과세연도 내에 대만 내에서 183일을 거주한 자 포함), 연간 해외소득이 NT\$100을 초과하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됨
 - 개인의 해외소득 항목은 10개의 카테고리(해외의 영리소득, 업무집행소득, 임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및 권리금 소득, 자력 경작·어업·목축업·산림업·광업 소득, 양도소득, 경기·경쟁 및 기회 당첨 상금 또는 급여, 퇴직소득, 기타소득)로 분류됨
 - 최저한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됨
 - 해외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12% 과세
 - 해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20% 과세
 - 그 외는 소득의 20% 과세
 - 개인의 해외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해외소득이 NT\$100만 이상이어야 함
 - 최저한세 과세표준⁷⁰⁾이 NT\$600만을 초과해야 함
 - 최저한세⁷¹⁾ 계산금액이 일반소득세액⁷²⁾보다 커야 함

하여 과세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과세방식과는 차이가 있음.

70) 소득세법에 따른 순수소득금액+해외소득+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의 보험금+주식거래에서 얻은 소득 +비현금기부금+비상장 주식 및 개인이 기금을 모아 얻은 수익이 증명되는 거래소득

71) 대만의 경우 최저한세 대신 기본소득세액(basic income tax amount)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72) 통산적인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 산출세액 - 투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이 최저한세와 일반소득세액의 차액보다 작아야 함
- 한편 외국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 (최저한세 - 일반소득세액) × 해외소득/최저한세 과세표준

〈참고〉 대만의 최저한세 과세제도

- 대만의 경우 속지주의 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대만 국내원천소득과 대만 국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Personal Income Tax)⁷³⁾를 과세하고 있음
 - 즉, 해외원천소득이나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음
 - 특히, 해외 펀드를 통해 대만에 거주하는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지급금은 해외 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소득세가 면제되는 고액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 또는 각종 소득세 공제·감면 규정을 이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거의 지지 않고 있는 고소득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음
 -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해외소득(단, NT\$100만까지 면제)
 - 사망시 받는 생명보험 지급금(단, NT\$3천만까지 면제)
 -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 종업원이 보상으로 받는 주식의 시가와 액면 가액과의 차액
 - 소득세 계산시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현물 기부금 공제금액
 - 상기의 소득을 모두 합친 후 NT\$600만을 공제(표준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최저한세 계산
 - 최저한세 금액이 계산되면 이 금액과 소득세 중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하면 됨
 - $\max(\text{개인소득} \times \text{누진세율}, (\text{개인소득} + \text{최저한세공제}) \times \text{단일세율})$

73) 모든 법정 소득(statutory income)에 대해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사. 대만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2009. 10. 28)

조세동향 09-23

- 대만 재무부가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대만 정부는 2010년부터 대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역시 2010년부터 인하하기로 함
- 동 개정안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비거주자가 조건부 채권, 구조화된 상품, 증권화된 상품 등에 투자하여 취득한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함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8%로 인하함
 - 대만은 외국인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가 대만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경우 20%~30%⁷⁴⁾의 세율로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는 20%의 단일세율을 적용기로 함

4.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2009 예산안

조세동향 09-02

- 재무부는 1월 22일 의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환급 및 일자리 보존을 위한 Jobs credit제도 도입 등의 세제개편 내용을 발표하였음

74)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하여 투자하였을 경우에 20%,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30%, 법인주주는 25% 적용

□ 법인세

-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현재 18%에서 2010년부터 17%로 인하
- 자선기부 증가를 위하여 IPCs(Institutions of Public Charter)와 기타 승인된 기관에 2009.1.1 ~ 2009.12.31 기간에 기부한 경우 공제율을 200%에서 250%로 인상
- 투자 촉진을 위하여 2010년과 2011년에 사업용으로 기계장치(plants and machinery)를 구입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첫해에 75%를 상각(capital allowance)하는 가속상각 허용
-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9년과 2010년에 결손금 전기이월제도 강화
 - 과거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실 한도액을 현재 \$100,000에서 \$200,000로 인상하고 현재 직전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던 것을 과거 3년까지 이월 허용
- 2010년과 2011년에 사업에 필요한 리노베이션 비용을 지출한 경우 현재 3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하던 것을 1년에 즉시 손금산입함
- 해외원천소득 과세면제 대상을 해외원천배당, 자회사 이익, 서비스 소득에서 모든 해외원천소득으로 확대
 - 싱가포르에 송금되는 경우 과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일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2009.1.21. 이전에 싱가포르 외의 지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2009.1.22 ~ 2010.1.21. 사이에 싱가포르로 송금하는 모든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면제됨

□ 소득세

- 2009 과세연도에 20%의 소득세 환급(상한액 \$2,000) 허용
 - 환급은 개인소득세 납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2008년 또는 2009년에 직장을 잃은 납세자들에게 소득세를 최고 24개월간 분할 납부 허용
- 현재 거주용 부동산의 연간가치(net annual value)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2010년부터 거주용부동산 소유자에게 연간 \$150,000까지 과세를 면제함

□ 조세지원제도

- 경기침체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으로 Jobs credit제도 도입
 - 1년간 실시하는 임시조치로 고용주가 CPF⁷⁵⁾(Central Provident Fund)가입자인 각 근로자의 월급여 중 \$2,500에 대하여 12%의 현금보조(cash grant)를 받음
- 창업기업에 대한 과세면제의 적용범위 확대
 - 창업기업의 경우 최초 3년간 과세소득 \$100,000까지 100%, \$100,000 초과 \$200,000까지는 50% 과세면제하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적용대상에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⁷⁶⁾ 포함

□ 기타세제

- 재산세
 - 산업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2009년 재산세(property tax)의 40% 환급
 - 많은 개발사업자들이 개발사업 계획을 연기함에 따라 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1.22부터 개발이 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2년간 재산세 납부 연기
 - 호텔에 대한 재산세를 2009.1.1부터 25%로 인상하기로 하였던 것을 1년 연기함으로써 2009년 세율은 20% 그대로 유지
- 도로세
 - 2009.7.1부터 자동차, 버스, 택시에 대하여 1년간 30%의 도로세 환급
- GST
 - 2009.4.1부터 항공기에 대한 0세율 적용범위가 재화 및 승객의 국제수송을 위한 모든 항공기, 적절한 항공기의 판매·유지·수선 서비스로 확대
 - 와인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와인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사용될 일정량 규모의 와인에 대하여 GST를 감면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에 발표할 예정
- 디젤세
 - 현재 디젤택시 소유자에게 연간 \$5,100의 디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9.3.1.부터 1년간 부과하지 않음

75)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실시하는 정부 주도에 의한 저축

76) 회사의 한 형태로 사원(members)의 책임이 청산시 분배받는 자산금액으로 제한되는 회사

나. 싱가포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한시적 확대

조세동향 09-17

- 2009. 8. 7 싱가포르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음
 - 현재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국외원천소득(국외원천배당, 해외지사 이익, 해외용역 제공에 의한 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고 있음
 - 특정요건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의 과세관청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외국에서 적용 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함
 - 과세면제 소득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2009. 1. 21 이전에 발생하였고 2009. 1. 22 ~ 2010. 1. 21 기간에 싱가포르로 송금되는 모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특정요건과 관계없이 모두 과세면제함

5. 홍콩

가. 홍콩 2009/2010 예산안

조세동향 09-05

- 홍콩 재정부는 2009년 2월 25일 2009/1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09년 4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감세의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주장강 삼각주 지역과의 경제적인 연대 강화, 기술 및 혁신산업 발전, 금융·사업·관광허브로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 제시
 - 대규모 재정투자 여파로 HKD399억의 재정적자 발생 예상
 - 경기부양 목적으로 HKD3,016억의 재정 투입

〈홍콩의 중기예산 전망〉

	2009-10 (\$billion)	2010-11 (\$billion)	2011-12 (\$billion)	2012-13 (\$billion)	2013-14 (\$billion)
Operating revenue	234.2	235.3	253.7	273.5	290.0
Operating expenditure	244.0	249.4	258.1	267.1	276.4
Operating surplus/(deficit)	(9.8)	(14.1)	(4.4)	6.4	13.6
Capital revenue	27.5	44.3	52.1	53.7	56.3
Capital spending (including payments from the Capital Investment Fund)	54.1	55.2	69.6	68.9	71.2
Repayment of government bonds and notes	3.5	-	-	-	-
Capital financing deficit	(30.1)	(10.9)	(17.5)	(15.2)	(14.9)
Consolidated deficit	(39.9)	(25.0)	(21.9)	(8.8)	(1.3)
- as a percentage of GDP	2.4%	1.5%	1.2%	0.5%	0.1%
Fiscal reserves	448.1	423.1	401.2	392.4	391.1
- as number of months of government expenditure	18	17	15	14	14
- as a percentage of GDP	27.2%	24.6%	22.3%	20.9%	19.9%
Public expenditure	319.4	326.8	350.0	358.7	370.9
- as a percentage of GDP	19.4%	19.0%	19.5%	19.1%	18.9%

□ 조세분야

- 근로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50% 감면(단, HKD6,000 한도)
 - 전기에 비해 감면규모 축소(전기에는 근로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75% 감면)
- 조세조약 체결국가 확대(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정보교환약정 등)
- 이슬람 자본의 유입을 위해 인지세·이윤세·재산세 등의 세계개편(계획)
-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초 등록세가 면제되는 기간 5년 연장
- 2009/10연도 최초 두 분기의 재산세 면제(각 부동산마다 분기당 HKD 1,500 한도)

□ 기타의 조치

- 민생과 관계되는 정부 수수료 및 부담금의 동결기한 1년 연장(2010년 3월 31일 까지)
- 인프라 건설·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향후 2~3년 동안 총 62,000개의 일자리 창출⁷⁷⁾

77)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6. 호주

가. 호주 경기부양법안

조세동향 09-03

- 호주 정부는 2009.2.3 일자리 지원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420억호주달러 규모의 Nation Building and Jobs Plan을 발표하였으며, 다음의 조세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하여 2009.6.30 이전에 취득하여 2010년 이전에 설치하거나 또는 2009.12.31 이전에 취득하여 2010.12.31 이전에 설치하는 적격자산에 대하여 30% 또는 10%의 추가상각 허용
 - 적격자산이란 금액이 10,000호주달러(소기업의 경우 1,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호주 내에서 사용되는 자산
 - 조세지출 규모는 2009/10~2011/12에 걸친 3년 동안 약 27억호주달러
 - 경기부양을 위하여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1회성 보너스 지급
 - 약 870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Tax Bonus for Working Australian
 - 대상자는 2007-08년도에 납부세액이 있는 개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성 판정 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방식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전 자이체 또는 수표를 통해 지급할 예정임
 - 보너스 금액은 과세소득이 80,000호주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950호주달러, 80,000호주달러 초과 90,000호주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650호주달러, 90,000호주달러 초과 100,000호주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300호주달러
 - 약 150만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Single Income Family Bonus
 - 대상가정은 1인의 주된 소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으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가정당 950호주달러 지급
 -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부를 지원하기 위한 Farmer's Hardship Bonus
 - 지급액은 1인당 950호주달러이고 약 21,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총지급 규모는 2,040만호주달러

- 취학자녀를 둔 150만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Back to School Bonus
 - 2009.2.3 현재 취학자녀(4세~18세)의 수는 약 280만명이고 적격한 자녀 1인당 950호주달러를 지급하며 총지급규모는 26억호주달러
- 승인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Training and Learning Bonus
 - 적격한 대상자 1인당 950호주달러이며 총지원규모는 5억 1,120만호주달러

나. 호주 2009-10예산안

조세동향 09-11

- 호주 정부는 2009. 5. 12일 2009-10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미래를 위한 기반시설에 투자함으로써 현재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경기침체 상태에서 미래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함
 - 기반시설에 대한 총투자액은 220억호주달러 규모임
 - 도로건설에 34억호주달러, 도시철도(metro rail)에 46억호주달러, 항구 및 화물운송시설에 3.8억호주달러 투자
 - 청정에너지 개발에 45억호주달러, 대학 및 연구기관 프로젝트에 45억호주달러, 병원 및 의료 기반시설에 32억호주달러 투자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의 최초 구입 및 건설에 대한 지원정책인 First Home Owner Boost의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함
 - First Home Owner Boost란 2008. 10. 14~2009. 12. 31 기간에 계약된 최초주택의 구입 및 건설에 대해 기존의 7,000호주달러 보조금에 추가하여 7,000호주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총 14,000호주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 호주 경제의 중심이며, 민간 분야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증가
 - 소기업이란 연매출액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임
 - 2008. 12. 31~2009. 12. 31. 기간에 구입하여 2010. 12. 31. 이전에 사용에 들어간 적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투자비용의 50% 감가상각을 허용함

다. 호주 내국인의 해외근로소득 과세

조세동향 09-19

- 내국인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한 예산안에서 호주 내국인의 해외근로소득(employment income)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6월 24일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과거에는 원천지국가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호주의 소득세에서 과세가 면제되었음
 - 개정 법안에 의하면, 해외근로소득에 대해서 호주에서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 해외구호활동 및 해외 과세당국에서 과세면제하고 있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호주에서의 과세면제가 적용됨
 - 동 제도는 2009. 7. 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추가적인 6억 7,500만호주 달러의 세수가 향후 3년에 걸쳐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라. R&D 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변경

조세동향 09-22

- R&D 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임
- 현행 R&D 조세지원제도: 소득공제 방식
 - 당해연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125%를 소득공제하고, 과거 3년 평균 연구개발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법인의 경우에는 150%의 소득공제를 적용함
 - 연간 매출이 500만호주달러 미만인면서 R&D 지출이 연간 2만~100만호주달러인 법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했을 때 감면되는 금액을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tax offset)으로 공제할 수 있음

- 개정된 R&D 조세지원제도: 세액공제 방식
 - 매출액 2천만호주달러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R&D 지출액의 45%에 상당하는 환급가능 R&D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되고, 매출액이 2천만호주달러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R&D 지출액의 40%에 상당하는 환급불가능 세액공제가 적용됨
 - 법인세율이 30%인 점을 고려할 때, 45%의 세액공제는 150% 소득공제를 하는 것과 효과가 동일하고, 40%의 세액공제는 133%의 소득공제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 환급불가능 세액공제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7. 뉴질랜드

가. 조세감면안

조세동향 09-04

-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월 4일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 촉진 정책으로 N\$4.8억 규모의 조세감면안(tax relief package) 발표
 - 중소기업은 향후 4개 연도에 걸쳐 N\$4.8억 규모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유동성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 기업들이 잠정세액을 산출하여 중간 납부할 때 당해연도 성장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 소득증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 왔으나 경기 하강기임을 고려하여 이러한 5%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과소납부와 과대납부의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각각 14.24%에서 9.73%로, 6.66%에서 4.23%로 인하하고 2009.3.1부터 적용
 - GST 금액을 산출할 때 Payment basis⁷⁸⁾를 적용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 금액을

N\$130만에서 N\$200만으로 인상하고 GST 등록기준을 매출액 N\$40,000에서 N\$60,000으로 인상

- 업무관련 법무비용 중 N\$10,000 이하는 발생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 공제
- Fringe Benefit Tax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소액의 복리비용을 1인당 분기별 N\$200에서 N\$300로 인상하고 고용주 1인당 연간 한도는 N\$15,000에서 N\$22,500로 인상

□ 조세감면안에 이어 2월 11일에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억 규모의 공공 투자사업 계획도 발표

- 교육분야: N\$2억 1,670만 규모로 5개의 학교 신설 및 기존 ICT 인프라 개선
- 교통분야: N\$1억 4,250만 규모로 5개의 대규모 고속도로 확장 및 소도로 및 지방 도로의 개선 사업
- 주택분야: N\$1억 2,450만 규모로 10,000여개의 State House⁷⁹⁾의 리노베이션과 향후 6개월에 걸친 69개의 State House 신축사업

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조세동향 09-14

□ 2009. 7. 7일 뉴질랜드 국세청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Resident Withholding Tax: RWT) 및 투자회사(Portfolio Investment Entity: PIE)에 대한 세율을 최근 개정된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율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개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원천징수세율(RWT)을 현재의 소득세율(12.5%, 21%, 33%, 38%)과 일치시키는 방안으로 2010. 4. 1부터 시행할 예정임
 - 현행 RWT 세율은 19.5%, 33%, 38%, 39%임
- PIE의 경우 그동안 법인세율 대신 투자자들의 소득에 따른 적용세율(Prescribed Investor Rate: PIR)로 과세해 왔으나 현행 법인세율인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78) GST 산출은 payment basis 또는 invoice basis에 따라 산출될 수 있는데, payment basis란 대금납부 기준이고 invoice basis란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의미함.

79) state house란 뉴질랜드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공공주택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음.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임

- 2010. 4. 1.~2011. 3. 31. 기간에는 금융기관이 새로 도입하는 세율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법인세율을 적용함
- 현행 PIR은 소득에 따라 19.5%, 30%임
- 동 법안은 7월 말경에 국회에 제출되어 12월경에 확정될 예정임

다. 뉴질랜드 의회 세법개정안 승인

조세동향 09-20

□ 뉴질랜드 의회는 2009년 9월 18일 세법개정에 관한 법안(Taxation Bill)을 승인하였음

□ 주요내용

-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의 해외소득 과세면제
 - 뉴질랜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의 해외 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active income)에 대하여 과세면제함
 - 동 규정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 이전수당(relocation payment), 야근식비(overtime meal allowance)에 대한 과세처리를 명확히 함
 - 그동안 이전수당 및 야근식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나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에서 과세면제할 것을 명확히 하였음
- 급여기부제도(payroll giving scheme) 도입
 - 종업원이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기부하는 방식인 'payroll giving scheme'을 도입함
 - 이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모두 자발적 의사로 참여하는 것임
 - 종업원이 급여를 통해 납부한 기부금(payroll donation)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없이도 기부금액의 33.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 세액공제 금액은 종업원의 원천징수세액(Pay as you earn)에서 상계함

2009년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년 4월 13일 인쇄

2010년 4월 20일 발행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1318-71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